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100089-01



노년, 연령주의와 노인인권

발 간 사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모르게 나이에 근거한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노인인권 인식개선 안내서」는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고,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을 돕고자 마련한 자료입니다. 안내서 곳곳에는 노인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령이어서 이 치료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서운함, 취업이나 재취업 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 등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위축되고, 스스로를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나이에 대한 편견은 다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스스로의 연령 편견(자기지향적 연령차별주의)도 삶의 기회를 좁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뿌리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더 존중하며 나이 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노인인권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 노인권리협약 성안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나이에 근거한 편견과 차별인 ‘Ageism(연령주의, 연령차별주의)’를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이 흐름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존중받고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안내서에는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차별의 모습, ② 내가 가진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점검해보는 방법, ③ 일상에서 연령주의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 ④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넓히기 위한 조언 등이 친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통해 노년이 “가능성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삶이 계속 확장되는 또 하나의 단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더 당당하게 마주하고,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노인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 권고를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노인인권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는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토대입니다.

발간사

이 안내서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노년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

목 차 CONTENTS

프롤로그

1. 나이 들면 처벌받는 사회	15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2. 나이를 넘어서	35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3. 노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 무의식과 노년 인권	55
정진웅(前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4. 노인 차별, 하나씩 답하기	77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자기결정, 그리고 존엄	99
권금주(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6. 요양시설에서 존중받는 노후: 인권 보호의 실천 방안	123
이민홍(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프롤로그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불과 2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로부터 3050 강국으로 비상한 나라이다. 이렇게 물질적 풍요와 민주주의를 키워 올리면서 이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국이 되었다. 2025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7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20%가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가 이미 당도해있는 현실이다. 다만,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빈곤율이 40%로, OECD 회원국 평균 14%의 3배 가까운 수준이고, 자살률도 OECD 회원국들 중 압도적 1위를 23년째 유지하고 있다. 해마다 4,000명 가까운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비슷한 수의 노인들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다. 최근에는 노인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의 노인혐오 현상도 심각하다. 경로효친은 시대착오적 요구가 된 지 오래다.

경제강국이 되었는데, 왜, 어떻게, 절반 가까운 노인이 빈곤으로 고통받고, 다수의 노인들이 소외와 고독, 빈곤 속에서 자살과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되게 되어 있다. 노년의 불행은 곧 젊은이들의 내일의 불행이다. 노인이 고통받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말하듯, 노년이 불행한 문명은 실패한 문명이다. 노인이 되어도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세상, 늙어감을 (노인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오늘의 한국노인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과 차별, 이른바 연령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체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노인이 되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한국을 만들려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인과 노화를 보는 태도와 시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고 뿌리 깊다면, 그런 사회에서 노인이 인권의 주체로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닌가. 논리적 모순 아닌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늙는다는 것은 두렵고 슬픈 일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자란다. 주름은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고 노인은 열등하고 쓸모 없는 존재라고 자연스럽게 믿는다. 노인은 취약하고 허약하고 의존적이고 완고하고 그리고 보호하려면 끝없이 자원을 투하해야 하는 불량품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가 노년을 보는 시각이고 정책과 제도에 구조적으로 스며들어있는 전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노인 스스로가 내재화하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노인 비하와 홀대·차별과 배제에 동참한다. 많은 노인이 차별을 당해도 문제시하기는커녕, 차별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가 노인을 보는 부정적 시각, 노인과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노인을 홀대하고 노인차별이 도처에 넘쳐나게 만든다. 우리 모두가 연령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

연령주의(Ageism)라는 용어는 1969년 미국의 정신과의사이자 노년학의 아버지, 로버트 N. 버틀러가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사용했다. 그는 노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미국 중산층의 편견을 비판하고, 그와 동료들은 그것이 노인의 건강과 인권을 어떻게 얼마나 해치는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설립등을 통해 엄청난 실증연구를 축적했다. 비슷한 시기부터 현대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는 의학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도전받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연령주의는 노인의 건강, 수명, 인권, 발전을 위협하는 글로벌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것의 해체가 UN과 WHO 등 국제기구가 선도하는 전 지구적 아젠다가 되었다.

연령주의의 해체에는 노인의 빈곤, 노년의 불행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의 선택이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 성, 계급, 문화 등 다양한 그물망에 의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과정이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사회가 부여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노쇠가 배제의 원리가 되는 것은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세기 말 비스마르크가 시작한 65세 정년퇴직제도는 1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노인배제 기제이다. 노인으로부터 일할 권리를 의도적으로 빼앗음으로써, 일이라고 하는 생산성과 상호성의 인간세계로부터 노인을 배제, 축출하고, 연금이라는 보잘것없는 보상으로 노인의 무위와 비생산성, 빈곤과 고립, 인간의 사물화를 제도화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인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생산성에서 배제하고 나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생산성

이 경제활동인구에게 짐이라 말하고, 초고령사회가 되니 그 부담이 과하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에서 노인이 겪어야하는 비참한 현실은 그 사회의 감춰진 원칙과 목표를 드러내는 것이다.

최근 세계인권 옹호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한국의 정년제도, 임금피크제도, 연금제도 등을 분석하는 한국 고령노동자 인권 보고서를 내면서, “Punished for Getting Older(나이들면 처벌받는 사회)”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책의 제 1장의 제목이 되기도 한 이 제목은 사회가 노인에게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빼앗음으로써, 노인이라는 인구집단에게 가난과 고독, 장애와 절망이라는 형을 언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인을 천민계급으로 취급한다고 말하는 시몬 드 보부아르를 상기시킨다.

이 책은 노년 문화인류학자, 교육 사회학자, 이론, 실천, 정책, 행정 분야의 노인복지학자들, 총 여섯 명의 노년학 연구자들이 두 차례 집담회를 가진 후 쓰여진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령주의라는 개념을 개괄적으로 그러나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자기혐오에 이르는 연령주의 매커니즘, 연령통합의 가능성을 짚어보고, 무의식적 연령차별의 문화인류학적 담론분석, 노인돌봄 현장에서 선의로 작동하는 연령주의, 격리된 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존중 방안 등 연령주의의 기본적인 측면들을 논의하는 얇은 연령주의 입문서가 만들어졌다.

제1장 “나이 들면 처벌받는 사회”에서는 한국 노인복지학의 태두로 알려진 최성재 교수가 연령주의의 기본개념, 형태, 현황, 발생 원인

과 대안을 총괄적으로 정리한다. 그는 법제도개혁, 인식개선교육, 세대 간 접촉, 고령자 스스로의 주체성 강화를 연령주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위에서 언급한 Human Rights Watch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한국 노인들은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권리마저 잃어간다는 점에서 나이 드는 것이 죄가 되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한다.

제2장 “나이를 넘어서”는 교육사회학자 김찬호 교수가 동서양 역사를 넘나들며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노인의 의사소통거부를 외부세계의 공격에 대한 대표적인 방어이자 공격의 수단이라 말하며, “비스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 3자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인과 유아가 함께하는 공간, 정약전과 창대의 교학상장의 즐거움 등 세대통합의 사례를 환기하며 연령주의 해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노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적 무의식과 노년 인권”은 한국을 대표하는 노년 문화인류학자 정진웅 교수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노인차별의 본격 문명사적 담론분석이다. 노인이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층위의 무의식적 노인차별을 분석하고, 연령차별과 젠더차별, 신분차별의 교차성을 놓치지 않고 강조한다. 윤리적으로 열등한 타자로서의 노년, 의미와 문화가 증발한 잉여의 시간으로서의 노년, 젊음에 대한 집착과 늙음에 대한 혐오를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년이 인권의 주체로 승인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년 인권 문제가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

“노인차별 하나씩 답하기”라는 제목의 제4장은 사회복지학자 최혜지 교수가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어떤 이유로 생겨나고, 강화되는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혜지 교수에게 차별은 개인이라는 실체에 대한 체계적 무시와 불인정이며, 그것은 가족관계, 공적관계,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일종의 문화로 존재하는 차별적 관행은 무기력과 무저항으로, 무기력과 무저항은 다시 차별적 규범을 내재화하는 자기혐오에 이른다. 차별적 경험이 많은 노인 집단일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하며,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힘주어 강조한다.

제5장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 자기결정, 그리고 존엄”에서는 실천 노인복지학자 권금주 교수가 노인보호의 실천 현장에서 인간존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신선한 통찰력으로 접근한다. 노인이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소설과 드라마 속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어떤 노인 돌봄 실천 현장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경험을 소환하며, 통제와 억압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선의의 과잉보호 속에 무의식의 노인차별이 내장되어 있음을 돌아보게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요양시설에서 존중받는 노후”에서는 사회복지학자 이민홍 교수가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요양시설 현장의 노인 인권 보장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시설생활 노인권리 선언을 확인하고, 미국, 영국, 독일의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권리지침

들을 벤치마킹하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도 자신의 개별성을 존중받고,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집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보장과 연령주의 해체의 구체적인 방식임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정의된다. 노인인권 구현의 전제는 노인도 젊은이들과 다름없는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인데, 노인이 열등하고, 무능하고, 쓸모없고, 취약하고, 인간계에서 배제된 사물로 인식된다면, 노인은 자선과 긍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연령주의는 노인 인권의 논리적 부정이고, 연령주의 해체 없이는 노인의 인권 존중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사회 구성원들이 내재화하고 있는 연령주의는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구현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연령주의 극복의 첫걸음은 연령주의를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연령주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노인인권교육교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상이 시작되었으나, 제한된 노인인권 교육현장의 표준적 교육교재라기보다, 노인인권교육자나 노인돌봄현장 실천가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노인들이 함께 읽으며 연령주의를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노인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읽을거리로 시도되었다. 이 얇은 책이 100세시대 한국을 사는 시민과 노인 독자들이 연령주의를 이해하고 그 해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연령주의 없는 장수 한국, 노인도 인간답

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는 앞으로의 길고
쉽지않은 여정에 작은 첫 발자국들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12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이해경



나이들면 처벌받는 사회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나이 들면 처벌받는 사회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1. 왜 ‘나이’가 죄가 되는가?

고령화는 21세기의 세계적 추세이다. 2025년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38개국 중 25개국이 노인 인구 20%를 넘었으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20%(약 1,060만 명)를 넘는 ‘고령화사회’가 되었다. 흔히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7~14%면 고령화사회, 14~20%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부르며, 유엔(UN)이 분류한 것으로 믿고 있다. UN이 분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체불명의 분류이다(최성재, 2024). 국제적으로는 그런 분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만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의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는 말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나이 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 속에 여전히 깊숙이 배어 있다. 나이 들면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연령차별 현상은 OECD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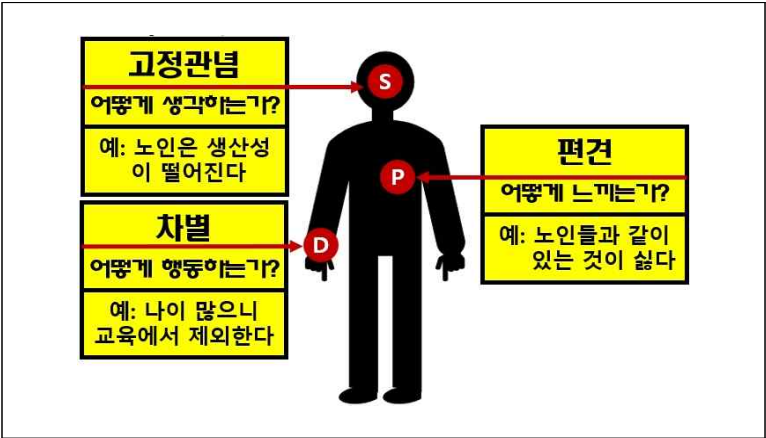
나라 경우는 아주 심각한 편이다.

연령차별은 단순히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 전반에 스며들어 노인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고령자들은 나이 하나 때문에 경제,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나이 든다고 실제로 법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권리마저 점점 잃어간다는 점에서 나이 드는 것은 죄가 되어 '사회적으로 처벌'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2. 나이가 죄가 되게 하는 근본적 인식구조: 연령주의

1) 연령주의의 의미

나이가 죄가 되게 하는 연령차별을 포함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행동을 폭넓게 표현하는 인식구조를 가리켜 '연령주의(ageism)'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연령주의를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고정관념에 가두고, 편견을 가지며, 차별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연령주의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노인에게 적용되는 연령주의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림 1〉 연령주의의 의미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2021), Global Report on Ageism에서 재구성

고정관념(stereotype)은 어떤 사회현상이나 어떤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기대를 말한다.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젖어 나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 사회적 역량,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을 부정적으로 추론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추론은 해당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 모두 똑같이 취급하는 과장된 일반화를 낳는다. 과장된 일반화의 예는 “노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일부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건강, 능력, 행동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모든 노인이 그렇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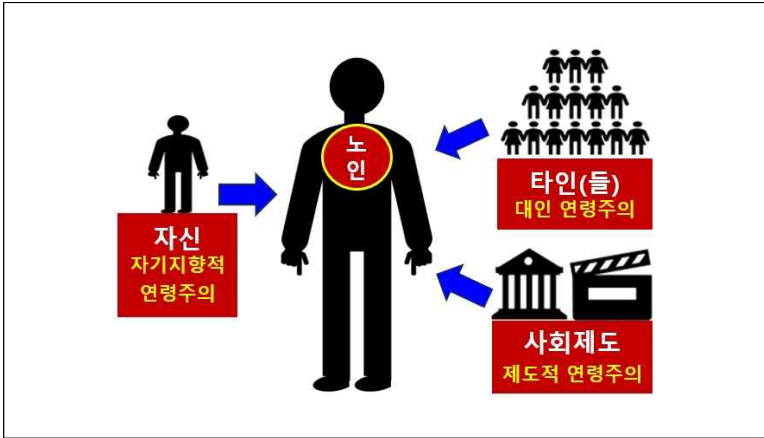
편견(prejudice)은 소속 집단을 바탕으로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 갖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반응 또는 느낌을 말한다. 연령주의에서 편견은 나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연령집단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갖는 감정반응이나 느낌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 싫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연령주의에서 편견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다.

차별(discrimination)은 어떤 사람이 특정 집단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실제로 속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행동이나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나이 많으니 교육에서 제외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이라는 이 3가지 차원은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고정관념은 편견과 차별에 영향을 미치고, 편견은 고정관념과 차별에 영향을 미치며, 차별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영향을 미친다.

2) 연령주의의 형태

연령주의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1) 제도적 연령주의 (2) 대인 연령주의 (3) 자기지향적 연령주의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령주의의 형태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2021), Global Report on Ageism에서 재구성

제도적 연령주의는 나이를 기반으로 불공평하게 기회를 제한하거나 체계적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 규칙, 사회규범, 정책 및 제도의 관행을 말한다. 제도적 연령주의는 오랫동안 관행이 되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나이에 따라 보살핌을 다르게 배당하는 정책, 노동 분야에서의 연령차별의 고용 관행 또는 정년퇴직(강제퇴직) 등이다.

대인 연령주의는 둘 이상의 개인이 서로 관계하는 가운데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대상자)가 구별된다. 예를 들면, 개인이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의사결정에서 노인(들)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노인(들)과의 접촉과 관계를 피하는 것 등이다.

자기지향적 연령주의는 노인 자신을 향한 연령주의이다. 노인(들)이 반복적으로 연령을 기반한 편향된 생각이나 행동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도 그런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노인 자신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보고, 그런 편향된 생각이나 행동을 따르게 된다. 아울러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믿거나 그런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면, 노인은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망설이거나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단하여 배움을 포기하게 된다.

3. 나이 들면 처벌받는 한국 사회

연령주의는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 전반에 스며들어 노인의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 2025년 7월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비영리 국제 NGO, 이하 ‘HRW’라 함)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해 “나이 들면 처벌받는다: 한국의 연령 기반 정책과 고령 노동자의 권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의 제도적 연령주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 보고서는 42세에서 72세까지의 한국 사회 근로자 34명을 인터뷰

하여 고령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 가지의 연령 기반 고용 제도, 즉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제, 임금 피크제 및 재고용 정책, 그리고 이에 더하여 그 손해를 더 악화시키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개별 고용주가 하는 차별이 아니라 현행 법과 정책이 고령 노동자에게 구조적으로 가하는 차별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연령 기반 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고령자 고용법’이라 함)과 정책, 적대적인 직장 문화, 그리고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로 노동자는 나이 들에 따라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년제는 많은 고령 노동자에게 강제퇴직을 강요하고, 임금 피크제(60세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55세 이후 60세까지 매년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는 급여를 매년 줄이는 퇴행적 임금체계이다. 이와 같은 재고용 정책은 이들을 더 낮은 임금과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미비한 사회보장제도까지 더해져 고령 노동자들은 나이 드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사회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또한 고령자의 능력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부정적이고 연령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퇴직을 강요당한 고령 노동자들은 두려움, 불안, 소속감 상실, 삶의 목적과 존엄의 붕괴,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의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퇴직 강요, 연령에 따른 임금 삭감, 그리고 더 낮은 임금과 더 불안정하며 종종 육체적으로 더 고된

일자리로의 재배치라는 세 가지 정책은 고령자의 노동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정년퇴직제도는 나이를 이유로 노동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차별이고, 임금피크제는 나이 들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는 경제적 차별이고, 재고용/재취업 정책 역시도 저임금 노동을 감수하게 하는 경제적 차별이고, 직장 내 연령차별과 배제로 인한 자존감 저하, 우울감, 소외감은 정서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나이 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법적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차별을 감수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나이 들면 처벌받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일상에서 겪는 연령차별/연령주의 현황

연령주의는 단순히 법이나 제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 속 곳곳에 배어 있거나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고령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흔히 겪는 차별과 불편의 현황이다.

1) 고용·노동 영역

50세 이상 취업자와 구직자 271명 중 67.5%가 고용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했다(사회고용연구원, 2022). 고령 근로자는 59세 이하 근로자보다 평균 임금이 29% 낮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약 두 배에 달한다(고용노동부, 통계청, HRW, 2025). 한국은 법적으로 정년을 최소 6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한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상당수가 생계형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7%(2022년)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보건·의료 영역

2023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의 8~9%가 최근 1년 내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반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보호 시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5; 임정미, 2021년). 고령층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이 있고, 3개 이상인 경우가 35.9%에 달한다.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11.3%로 높다. 그리고 진료와 치료 결정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배제나 과소 치료도 보고되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는 522만 9천 원, 본인 부담금은 123만 6천 원으로 경제적 부담 또한 치료 지연과 회피를 유발한다.

3) 사회적/대인 관계 영역

상업시설에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14.0%, 대중교통에서 12.6%, 가정 내에서 8.6%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노인을 꼽은 비율은 10.4%로, 장애인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사회생활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4) 미디어와 대중문화 영역

고령층의 매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연령주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60대가 2022년 46.6%에서 2024년 60.7%로 증가했고, 70세 이상도 27.2%(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4)를 기록했다. 그러나 방송, 영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노인을 ‘사회적 부담’이나 ‘방해 요소’로 묘사하는 담론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고령세대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5) 정책·제도 영역

정년제와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연령을 근거로 한 고용·보수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 HRW는 한국의 이러한 고용정책이 국제인권 기준에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고령자의 임금·고용 형태 격차를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최고 노인 빈곤율은 낮은 연금 급여 수준, 기초연금 사각지대, 실업급여 접근성 부족 등 제도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6) 디지털·정보 접근 영역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전체 평균 대비 70.7%로 취약계층 중 가장 낮다. 특히 디지털 역량(기술) 부문은 65.1%로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고령층의 59.6%가 키오스크 이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용 경험은 57.1%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뒷사람 눈치’ 등 심리적 압박이 배제감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는 고용, 의료, 사회관계, 미디어, 제도, 정보 접근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제도적·구조적 차별과 문화적·심리적 편견이 결합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5. 연령주의는 왜 발생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왜 나이 든 사람을 차별하는 연령주의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깊숙이 배어 있는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중요한 원인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Gutterman, 2021).

1)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많은 사람은 노인을 모두 무능하고, 느리고, 고집 세고, 말 많고, 허약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보는 것을 자기 내면화하여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노인을 차별하게 된다.

2)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회피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노인은 죽음에 더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하여 죽음을 연상하게 만든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피하고 싶은 심정에서 노인을 회피하거나 노인을 싫어하게 된다.

3) 젊음 중심 문화의 확산

젊음을 중시하고 찬양하는 미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를 위시한 동양 문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젊음 중심 문화는 노인의 역할과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때로는 젊음과 나이 늙을 대비해 노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부각하기도 한다.

4) 사회의 생산성과 경제적 잠재력 강조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산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령자나 노인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청년과 중년층에 부담을 주는 계층으로 인식되어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5) 제도와 정책의 미비

청년 실업 문제를 중요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령자의 일자리는 뒤로 밀리게 된다. 흔히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조사 연구한 결과, 일부 직종을 제외한 고용시장 전체를 볼 때 그런 생각은 사실과 다른 것(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 오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논리는 노동경제학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제도를 폐지한 국가에서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어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고령자의 노동권은 노인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적 권리인데 고령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하고, 노동 현장의 인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6) 대중매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드라마나 광고에서 노인은 종종 의존적이고 무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코미디 같은 데서 일부 노인의 단편적 행동이나 외모 등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젊고 빠른 이미지만이 긍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부정적 묘사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연령차별과 연령주의를 각인시키게 된다.

7) 노인 관련 연구나 노인 문제 인식에서 부정적 측면 부각

미국 등 선진국에서 노인과 노년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초기에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연구 대상이 된 노인의 대부분은 장기요양 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사회문제로 인식된 사람 중에 노인이 많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제 노인들도 더욱 많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 노인들 대부분은 빈곤, 질병, 고독, 소외 등의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노인’ 하면 ‘문제’라는 말이 따라붙어야 자연스러울 정도로 노인들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문제 노인은 전체 노인의 일부일 뿐인데도 일부 노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이 노인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확대/과장된 부정적 인식은 노인을 차별, 학대, 무시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인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6. 인권의 관점에서 본 연령차별/연령주의

나이 드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다. 연령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UN의 세계인권선언(제2조)에서도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UN은 1991년 고령자 권리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자율, 참여, 보호, 존엄, 자기실현이라는 5대 기본권을 제시했다.

노인의 인권보장은 2000년대 이후 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UN에서는 2011년부터 14년간 노인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고령화공개토론회(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를 운영하였다. 이 공개토론회는 2024년에 활동을 종결하면서 노인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서는 국제노인권리협약(국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UN 총회에 협약제정을 건의하였다. UN 총회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 2025년 현재 UN인권위원회에서 국제노인권리협약(국제법) 초안을 작성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연령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배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나이로 결정짓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다.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차별이란 금지된 차별 사유(예: 나이)를 근거로 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대 조치 등으로, 권리와 자유의 평등한 인정을 직·간접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침해

하는 효과 또는 의도를 가진 모든 차별을 의미한다.

7. 연령차별 없는 사회 가능한가?

연령차별/연령주의 문제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전 사회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HRW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고령자를 차별하는 노동관련 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취약 집단으로 인정되는 아동, 장애인, 여성 등 각각의 인권은 이미 UN에서 제정한 권리협약(국제법)을 우리 정부가 비준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노인의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제협약도 없고, 국내법도 없는 상황이다. 국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 다만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의 권리는 일반 성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에 추가하여 노인의 특성과 관련되는 권리(예: 장기요양보호 수급권, 자기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권, 이동의 자유, 말기 보호, 존엄사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UN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인권리협약 제정을 기다려 비준하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자체적 노인인권(기본)법을 속히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교육과 인식 개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연령주의를 배격하고, 학교와 직장 등에서 세대 공존 교육을 시행하고, 대중매체는 노인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해야 한다.

셋째, 세대 간 접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장유유서 문화 속에 노소의 분리, 즉 세대별 분리가 아직도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이다. 이러한 세대 간 분리는 세대 간의 이해 부족과 협력 부족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과 노인차별을 심화해왔다. 직업, 교육/학습, 사회봉사,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활동 영역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고령자 스스로의 주체성 강화도 필요하다. 노인도 스스로 노력하여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들이 자기 삶과 권리에 대해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인이 스스로 자각하여 자기지향적 연령주의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 노인 자치 활동, 참여예산 제도 등을 강화하여 이들을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노년기에 도달하기 전 늦어도 중년기부터 스스로 노후 삶을 미리 계획(노후설계)하여 준비하는 것도 고령자의 주체성 강화의 주요 방법이 될 것이다.

8. 연령차별 없는 미래 고령화사회를 향한 도전: 오늘의 노인은 내일의 나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연령주의는 단지 오늘의 노인만을 차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 자신을 차별하고 처벌하

는 것이다. 오늘 노인을 외면하면, 내일의 나도 외면받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나이 들이 존엄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령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사회다. 오늘의 젊은이는 곧 내일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2040년이면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현재의 2배인 40%가 될 것이고, 2070년이면 전체 인구의 46%, 거의 절반이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을 생각하면 하루 속히 ‘나이 들면 처벌받는 사회’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우리 앞에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고령화사회는 노인이 나이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로 시달리고, 나이 들었다고 처벌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젊은이와 고령자/노인이 나이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희망차고 발전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24).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5). 2024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2021).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역[일본:WHO(2021). Global Report on Ageism.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사회고용연구원(2022).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조사 연구(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 임정미(2021).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 Issue & Focus, 407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 최성재(2024). UN이 했다는 고령화사회 분류는 정체불명의 비과학적 분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회보, 제20호, 181~187쪽.
- Gutterman, A. S.(2021). Ageism: Where It Comes From and What It Does. A Publication of Ageism Project.
- Human Rights Watch (2025). Punished for Getting Older: South Korea's Age-based Policies and Older Workers' Rights. New York: Human Rights Watch.



국기인권위원회



나이를 넘어서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나이를 넘어서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1. 노화에 대한 공포

조선 시대에 그려진 초상화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한결같이 나이 든 얼굴이라는 것이다. 왜 젊은 시절에는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을까? 젊은이는 인간으로서 미완성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말에 ‘점잖다’는 말이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품격이 속되지 않고 고상하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젊지 않다’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야 안정된 인격과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과 연관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다. 조선 시대 남자들이 시달렸던 콤플렉스 가운데 하나가 수염인데, 수염이 얼굴 아래쪽에 골고루 곱게 자라나 있지 않으면 열등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유리했는데, 노인의 수염은 주름진 얼굴과 어우러지면서 훨씬 기품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예전만큼 고상하게 여겨지지 못한다. 오히려 세상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모습이 연상될 때가 더 많다. 빈

센트 반 고흐의 <슬퍼하는 노인>이 그런 이미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 그 그림에서 노인은 얼굴을 감싸고 있어서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음을 몸짓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오래전에 그려진 작품이지만 지금 시대 노인들의 자화상으로 다가온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것과도 같다’는 안 소니 파월의 말처럼 많은 노인이 늙어가는 데서 오는 곤경을 버거워한다.

지금 시대에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행해진다고 느끼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린다. 거기에는 현재 노인들이 처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것을 요약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보자. 노후 파산, 무전 장수(돈 없이 오래 산다), 유병 장수(병든 채 오래 산다), 무위 장수(할 일 없이 오래 산다) 등 경제력, 건강, 일 등에서 노후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두려움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증대한 요인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가? 노욕, 노회, 폭주 노인, 짐, 퇴물, 퇴화, 퇴행, 위축, 괴짜, 고집, 심술, 구두쇠 등 부정적인 단어들 많이 떠오른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노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표현도 많다. 툭딱, 노슬야치, 할때미, 연금충... 이른바 ‘혐로 사회’의 단적인 징후다. 그것은 노인의 자기혐오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안티에이징’ 풍조인데, 나이를 거슬러 외모를 유지하거나 바꾸는 산업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젊음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도록 만드는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나이 들은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노인이 된다는 것은 두렵기까지 하다. 이른바 ‘노화 공포증(gerascophobia)’이 만연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애써 외면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를 평가절하하는 풍조는 초고령사회에서 불행을 자초한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노인의 인권이 쉽게 망각되고 침해된다. 노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곧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한데, 늙음이라는 변화를 남의 일로만 받아들이기에 외면하고 무시하거나 기껏해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노인 유권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적 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있지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감수성이 박약한 편이다. 물론 거기에는 노인 스스로 젊은 세대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큼 위엄을 세우지 못한 탓도 있다.

2. 나이에 따른 위계서열

인명사전이나 인터넷에서 인물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정보는 태어난 해이고, 고인일 경우 서거한 연도까지 반드시 들어간다. 어느 시대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지금 살아 있다면 몇 살 인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기본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이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뉴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보도할 때 이름과 함께 반드시 나이가 표기된다. 새로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든 끄찍

한 범행을 일으킨 용의자든 예외가 없다. 일상생활에서도 나이가 중요하다. 연상인지 연하인지 또는 동년배인지에 따라 관계가 다르게 형성된다. 나이에 따른 상호작용의 문화적 문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우 당황해한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의 ‘위아래’가 사실은 반대임이 밝혀지면 당황하게 된다.

그렇듯 한국에서 나이 한 살 차이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나뉘는 것은 준비어와 함께 호칭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이 반말을 쓰는 사이에서도 나이를 묻는 습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키즈카페에 놀러 온 미취학 아동들이 처음 말문을 틀 때 나이부터 따진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아니면 동갑인지를 확인해야 호칭이 정해지면서 관계가 형성된다. 자동적으로 서열도 매겨진다. 2019년에 방영된 SBS스페셜 <왜 반말하세요? 한국 나이 서열 문화의 기원과 폐해>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나이는 묻지만 이름은 끝까지 묻지 않는다.

나이 확인의 ‘통과의례’는 평생 거듭된다.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아이가 몇 개월 되었느냐고 질문을 받고(흥미롭게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견주들도 상대 강아지의 나이를 흔히 묻는데, 외국에서는 드문 현상이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처음 얼굴을 마주치는 어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몇 살?’이라고 묻고, 학령기 이후에는 ‘몇학년?’이라고 묻는다. 똑같은 질문을 연거푸 받다 보면 귀찮아질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또는 상투적인 관심은 짜증을

유발한다. 지인의 아들은 말로 대답하는 대신 시선을 피하면서 손가락으로 다섯이라는 숫자를 내보인다고 한다.

커가면서 나이를 일방적으로 질문받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지만 나이를 확인하고 의식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 발생한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서로의 나이나 학년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고, 조금 가까워지면 형, 언니, 누나, 오빠 등으로 칭하는 경우도 흔하다. 직장이나 동호회에서도 구성원들이 친밀해지면 가장 어린 사람을 ‘막내’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렇듯 가족 호칭이 혈연의 범위를 넘어 사용되는 것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¹⁾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친구를 ‘이모’라고 부른다거나, 식당이나 매장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강아지를 인간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엄마 아빠라고 칭하는 것은 외국인의 감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나이의 확인이 언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끼리 시비가 붙으면 대뜸 ‘너 몇 살이야?’라고 묻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된다. 한눈에 보아도 한참 어린 상대일 경우에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라고 모욕을 준다. 그러면 어린 사람은 ‘나잇값을 해라’고 반격하기도

1) 2021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한국어 기원 표제어에는 ‘noona’, ‘oppa’, ‘unni’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상의 형제자매를 부를 때뿐 아니라 애정 표현 혹은 한국 대중문화 속 인기 배우나 가수를 지칭하는 단어로 소개된다. 두 번째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인데, 한류 문화 콘텐츠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한다. 그 정도까지 가면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접어드는 것인데, 갈등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엉뚱한 것을 쟁점으로 삼아 감정만 격해진 꼴이 된다. 이 모든 것이 나이에 따른 서열에 집착하는 문화에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듦(aging)은 양면적인 함의를 지닌다. 연장자로서 권력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심신의 기력이 쇠하고 사회적으로 입지가 줄어들어가는 이미지도 떠오른다. 시대가 바뀔수록 전자보다 후자가 부각되는 듯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노래가 히트를 친 것도 자연스러운 노화에 대한 거부, 세월을 붙잡아두고 싶은 욕망을 반영한다. 수명이 늘어나 노년이 점점 길어지는 요즘 젊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품고 사는 것은 불행하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을 충만히 누릴 때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매력적인 인품이 우러나온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나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야 한다.

3. 비스듬한 관계

몬드리안은 20세기 추상화의 거장이다. 그의 그림을 보면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까운 친구들이 대각선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절교할 정도로 그 두 가지 방향만 고집했다. 그가 보기에 1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은 무질서로 충만했고, 그 혼돈으로부터 인간을 구하려고 했다. 그는 수직과 수평을 세상의 본질적 형태이자 인간의 실존적 좌표로 여겼다. 반면에 대각선은 예

측 불가능한 무질서의 세계를 의미했다. 미술사가들은 불변의 절대적 근원에 대한 갈망이 몬드리안의 예술적 충동이었다고 해석한다. 그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 이뤄지는 조화로운 세상을 캔버스에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조화로운 세상은 비스듬한 선이 그어질 때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몬드리안과 함께 추상미술의 쌍벽을 이룬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자. 여러 방향으로 사선들이 뻗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다. 직선뿐 아니라 곡선도 다채롭게 배합되어 있다. 엄격한 기하학적 질서 대신 부드러운 음악적 리듬감이 느껴진다. 삶에는 몬드리안의 철저함도 필요하지만 칸딘스키의 너그러움도 소중하다.

그 명제를 인간관계에 적용해보자.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는 <수직>과 <수평>이라는 양극 사이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수직>은 상하 관계로서 책임과 보호 또는 지배와 복종으로 특징짓는다.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지도자와 추종자, 교주와 신도, 상사와 부하 등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수평>은 대등한 관계로서 협동과 배려 또는 비교와 경쟁으로 특징짓는다. 학교나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 사이에 맺어지는 교우 관계, 회사의 입사 동기들, 동호회 멤버들, 라이벌을 이루는 스포츠 선수들 등이 전형적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가 수직과 수평이라는 두 범주만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 그 사이에 여러 각도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울러서 <비스듬한 관계>라고 칭할 수 있겠다. 그

것은 쉽게 말해서 상하 관계와 친구 관계 사이에 있으면서 그 두 속성이 혼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오래전에 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사하라 미요시가 쓴 <청년기>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의 오랜 임상 경험에서 얻은 통찰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등교 거부나 출근 공포증 등의 증세를 드러내는 젊은이들에게 부모나 교사나 직장 상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그 문제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젊은이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에 삼촌이나 이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의 부담이 없는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젊은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다.²⁾

이렇듯 비스듬한 관계는 소통의 차원에서 가치를 드러낸다. 수직적 관계는 아무래도 일방적인 지시나 훈계가 주를 이루고 자칫 간섭과 통제로 흐르기 때문에 복종 아니면 반발의 양극으로 치우치기 쉽다. 그에 비해 비스듬한 관계에서는 위치 에너지로 짓누르지 않기에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찬찬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

또한 어떤 주제나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가 아닌 연장자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모종의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 집이나 학교에서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나누고, 여러 인생 선배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접

2) 笠原 嘉 [青年期：精神病理学から] (中公新書, 1979) 118~122쪽

하면서 자신의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인간관계가 다방면으로 열려 있다면 설령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능력이 부모나 교사, 그리고 또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제3자와의 교류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다.

비스듬한 관계는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가는 기반이 된다. 일본의 교육혁신가 후지하라 가즈히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스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3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3자는 부모나 잘 알고 있는 교사도,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상상해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스듬한 관계’의 지인이 많아질수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도 풍부해집니다.³⁾

인맥이 입체적으로 활성화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지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늘어나면서 문제 해결력이 신장되고 회복력도 한결 단단해질 수 있다. 후지하라 씨는 비스듬한 관계의 중요성을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수직적 관계가 기둥이고 수평적 관계는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소로만 구성된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기

3) 후지하라 가즈히로 [10년 후, 우리 아이의 직업이 사라진다] 이해령 옮김, 21세기 북스, 2018, 161쪽

등과 대들보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버팀대가 있다면 내진(耐震)의 강도가 한결 높아지게 된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 수직에서 오는 긴장과 수평에서 오는 불안정을 지탱하고 보완할 수 있는 힘이 비스듬한 관계에 깃들어 있다고 본다.

4. 노인과 유아들이 함께 하는 공간

“어린아이를 혼내기 위해 경찰서에 데려오시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묻고, 듣고, 답해주는 인내의 시간보다 더 나은 훈육은 없습니다.” 몇 해 전 어느 경찰서가 내걸어 화제가 된 현수막의 문구다. 자녀 또는 손주가 말썽을 피우는데 혼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서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나 조부모들이 종종 있어서 난감하다고 한다. 훈육의 어려움이 적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자녀의 수는 줄어들었는데 부모 노릇은 왜 이렇게 버거워졌을까?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부모 이외에 여러 어른과 관계를 맺으며 자라났다. 이모나 삼촌 등의 친척이 함께 살거나 자주 집을 찾아왔고, 동네에서는 이웃의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늘 마주쳤다. 그들은 아이를 함께 보살피면서 잘못하면 꾸지람도 해주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존재만으로 자연스러운 규율이 이뤄졌다. 말하자면 부모나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아이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더해 ‘비스듬한’ 관계가 다방면으로 열려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결망이 거의 사라졌다. 그것이 왜 문제인가. 앞에서 말했듯이 집과 학교에서의 수직적 관계는 간섭과 통제로 흐르기 쉽고, 또래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기 일쑤다. 비스듬한 관계는 그러한 긴장을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 이외의 연장자들과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다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인생 선배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접하면서 역할 모델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자신의 숨은 미덕을 발견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의 오류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학생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등교하게 되면서 지각하는 날이 많았다. 흠어머니는 생계에 쫓겨 아이와 동행할 수 없었다. 교장과 학부 모회는 출근길에 그 아이를 태워다 줄 학부모들을 찾아서 등학교 도움 스케줄을 짰다. 그 덕분에 그 아이는 매일 이웃의 부모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원래 무척 소심하고 기가 죽어 있는 편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정이 밝아졌고 낯선 어른에게 스스럼없이 말도 걸었다. 도우미로 참여한 부모들은 그런 변화에 뿌듯함과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세대의 간격을 넘어선 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테크노밸리에 가면 ‘뿌리와 새싹’이라는 어린이집이 있다. 이 어린이집의 특이한 점은 바로 옆에 ‘뿌리 경로당’이라는 노인 시설이 있다는 것이다. 그곳에 가보면 똑같이 생긴 건물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2008년에 세워졌는데 뿌리

는 노인을, 새싹은 아이들을 상징한다. 처음에는 술과 담배와 화투로 소일하기 일쑤인 경로당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놀이를 가르쳐주고, 텃밭도 함께 가꾼다. 또한 나들이를 하면서 나무와 꽃과 곤충의 이름을 알려주고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기도 한다. 아이들은 경로당 청소를 나서서 하기도 한다. 이렇듯 아이들은 집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부모 이외의 어른들을 대하면서 사회성을 단단하게 키워가는 셈이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와의 갈등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제 돌봄의 기능을 다각화하고 중층화해야 한다. 어린 시절의 육아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녀 양육도 지역사회가 열려 있으면 부모의 짐을 분담할 수 있다. 스포츠 클럽이나 자원봉사 모임 등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어른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면 가정과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관계는 어른들에게도 선물이 되는데, 특히 일에만 매달려 정체성이 빈곤해진 남성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가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비스듬한 관계는 고령사회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래로만 인맥이 구성되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외로워지기 때문이다. 연소자들과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연함, 권위주의를 벗고 소탈한 마음으로 타인을 맞이하는

문화가 절실하다. 점점 무정해지는 세상, 서로에게 비스듬히 어깨를 기대면서 건너가고 싶은 노인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 준다.

5. 교학상장의 즐거움으로

〈자산어보〉(이준익 감독, 2021)라는 영화가 있다. 정조가 서거한 직후에 벌어진 신유박해로 흑산도에 유배를 가게 된 정약전은 그곳에서 창대라는 청년과 친분을 맺게 된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 정약전은 창대에게 글을 가르치고,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관련 지식을 방대하게 축적해온 창대로부터 바다 생물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물로 한국 최초의 해양생물학 서적이자 어류도감이 탄생하였다. 나이, 신분, 학력, 전문 영역이라는 높고 견고한 장벽을 넘어서면서 이뤄낸 성과다. “나는 마침내 이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묵으면서 어족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자산어보]라고 이름붙였다.” [자산어보]의 서문에 쓰여 있는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제지간이라기보다는 동학(同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배움은 나이의 경계를 넘어서 쌍방향으로 일어날 때가 많다. 연소자가 연장자에게서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능숙한 몸짓이나 탁월한 통찰력을 배운다면, 연장자는 연소자에게서 사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역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한 생명력을 배운다. 그 교차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 자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단하고 남루한 현실에 색다른 시간의 무늬를 아로새길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한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연령을 가로질러 우정을 나누는 관계는 아주 많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도 친구와 같은 관계를 종종 맺었다. 26살이나 차이 나는 퇴계와 고봉이 오래 이어간 교류가 가장 잘 알려진 사례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면서도 13년간 110통 이상의 편지를 교환하면서 생각을 나누었다. 유명한 사단칠정 등을 둘러싼 사상적 논쟁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사도 폭넓게 공유했다. 퇴계는 아들뻘 되는 고봉을 학문적 도반으로 깎듯하게 예우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편지는 필사되어 주변의 선비들에게도 공유되면서 조선 중기의 유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조선 후기에도 학자들 사이에 나이 차를 뛰어넘는 교류가 종종 이뤄졌다. 본인이 책을 남기지 않아 우리가 배운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18세기에 한양의 지성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김용겸(1702~1789)이 있다.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문화적 자산 위에 스스로 천문역학, 예학, 음운학, 병학, 서화 등 다방면으로 엄청난 독서를 하고 다른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양 지식인들의 허브가 되었다.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등이 그와 긴밀하게 소통했고, 특히 황윤석이라는 함경도 출신의 청년과 20년 동안 깊은 교분을 나누었다. 이들은 모두 스무 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났지만, 사제관계라기보다는 배움을 사랑하는 지기(知己)로서 학문적 네트워크를 맺었다고 평가된다.⁴⁾

이렇듯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열 살 이상의 연령 차이를 뛰어넘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그러한 관계의 유연성이 사회적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주자학적 질서에 의문을 제기한 실학자들에게는 나이에 따른 서열의식이 더욱 희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연암 박지원의 생애에 그런 자취가 많이 발견된다. 그는 나이뿐 아니라 신분의 경계도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었다. 고미숙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암은 청년기에 이미 노인들과 우정을 나누는 바 있다. 우울증을 앓을 때 그가 주로 만난 이들은 괴짜 이야기꾼 민옹과 분노 장수를 하던 예덕(穢德) 선생, 신선술을 닦으며 바람처럼 떠돌던 김신선(金神仙) 등이다. 이들은 모두 70대, 90대 노인이었다. 당시는 위아래 10년 정도는 친구로 여기던 풍토였지만, 그걸 감안 하더라도 이 청년의 우정은 과감하고 파격적이다. (...)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세대 간 소통은 필수다. 청년은 노년과, 노년은 청년과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이 지배하는 21세기 문명은 청년들에게도 처음이지만 노년층한테도 처음 맞는 세상이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배우고 탐구해야 한다. 그야말로 청년과 노년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⁵⁾

예전에는 송년회를 ‘망년회’라고 불렀다.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뜻으로, 그만큼 힘겨운 세월을 살았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그런

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사람들의 동행 - 군신, 사제, 선후배, 부부, 친구, 의형제로 읽는 역사] (글항아리. 2021) 6장. 박학동지

5) 고미숙 [조선에서 백수로 살아남기] 프런티어, 2018, 132~133쪽

뜻의 ‘망년’은 일본에서 들어온 개념이고, 한국의 전통문화에서는 다른 의미였다. 망년지우(忘年之友), 망년지교(忘年之交)라는 말이 있었는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허물없이 사귀는 벗’을 뜻했다. ‘평교(平交)’라는 말도 있었는데, 나이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는다는 뜻이다. 앞서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예전에는 다섯 살 이상 나이 차가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친밀감을 나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한 관계는 현대사회에서도 간간히 일어난다. <최강 야구>라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본 적이 있다. 프로팀에서 활약하다가 은퇴한 선수들로 구성된 ‘몬스터즈’ 팀이 고등학생, 대학생, 18세 이하 국가대표팀 등과 시합을 벌인다. 후배들과의 부담 없는 친선 경기가 아닐까 싶지만 매번 필승의 각오로 치열하게 대결한다. 7할 승률을 목표로 했는데 결코 만만한 승부가 아니다. 어린 선수들이 ‘대선배’들과 접전을 벌이는 장면은 여느 프로 경기 못지않게 박진감 넘친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후배들의 탁월한 플레이에 경탄하면서 한 수 배우는 태도다. 모든 스포츠 경기 자체가 자연스럽게 학습을 수반하지만 나이와 경험에서 한참 아래인 팀에 패한 뒤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는 모습은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진수를 보여주는 듯하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나이의 차이가 수직적 서열을 자동 생성하는 문화에서는 관계의 각도를 약간만 바꿔도 새로운 기운이 순환한다. 그러한 에너지의 변환은 어느 분야에서든 가능하다.

“나이 들면 바둑에 필수인 순발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나는 늙었고, 내가 하수다. 두 점씩이나 놓아야 하는 하수가 맞으니 후배를 떠나서 고수에게 배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 후배에게 배우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⁶⁾ 한국 바둑계의 거목 서봉수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갈수록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의 노년은 공부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처럼 동갑내기 중심으로만 교우 관계가 맺어지면서 연령 차이에 의해 위계서열이 형성된 것은 근대 학교 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다. 이제 그 경직된 틀을 벗어나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빨라지는 은퇴 후에 길어진 여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고령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곤혹스러운 과제다. 늘어난 수명은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세대 사이에 다양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열어준다. 경계를 유연하게 가로지르면서 이뤄지는 배움과 협업은 의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 만남은 또한 각자의 인생에 반짝이는 선물이 될 것이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노인이 젊은이에게 귀 기울이는 세계는 축복받아야 한다.” 《탈무드》의 한 구절이다.

6) 차준철 “나는 하수다…후배든 중학생이든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다”, 《경향신문》, 2022년 10월 11일.

참고문헌

- 고미숙 [조선에서 백수로 살아남기] 프린티어, 2018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사람들의 동행 - 군신, 사제, 선후배, 부부, 친구, 의형제로 읽는 역사] (글항아리. 2021)
- 김찬호 [베이비부머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서해문집. 2024)
- 신지영 [언어의 높이 뛰기] (인플루엔셜. 2021)
- 정순운 [서당의 사회사](태학사. 2012)
- 차준철 “나는 하수다…후배든 중학생이든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다”, 《경향신문》, 2022년 10월 11일.
- 최봉영 [한국사회의 차별과 억압 - 준비어체제와 형식적 권위주의] (지식산업사. 2005)
- 笠原 嘉 [青年期：精神病理学から] (中公新書. 1979)
-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 후지하라 가즈히로 [10년 후, 우리 아이의 직업이 사라진다] 이혜령 옮김, 21세기북스, 2018



노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 무의식과 노년 인권

정진웅(前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노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 무의식과 노년 인권

정진웅(前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인권 문제 논의의 차원은 매우 다양하다. 노년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여서 노년의 삶의 고통이 증대하는 영역에서 노년 인권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다. 가령 1991년 유엔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다섯 가지를 노년 인권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원영희 2024). 요컨대 노년 인권에 대한 논의들은 대개 노년의 삶이 처해 있는 열악한 사회적 현실과 고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런 논의의 결과가 노년 인권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행정적 대응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 글은 이런 흐름에서 비껴나 노년 인권 문제를 문화적 차원의 문제로서 조명해 보려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노년에 대한 차별적 무의식들이 어떻게 노년을 다른 연령대와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는 비노년 세대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들이 노년 세대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현상이 대개는 의도적 차별의 결과라기보다 노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유된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조명해 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문화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 밀접하게 관여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를 종종 공유된 무의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문화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무의식의 층위에서 작동한다면 우리는 노년 차별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일상에서 다양한 노년 차별에 동참하고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그런 현상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노년 인권과 차별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함에 있어 문화적 분석의 긴요함을 드러내 보려 한다.

2. ‘노인’이라는 용어에 담긴 한국 사회의 신분차별적 무의식

2008년에 열렸던 한 노년학 콘퍼런스에서 청중석에 질의의 기회가 주어지자 80세쯤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손을 들고, “나는 노인이라는 말이 싫은데, 학자들이 노인이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하나 만들 수는 없겠느냐”는 요청을 한 일이 있다. ‘노인’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노인’으로 불리는 당사자들이 이 용어에 배어 있는 한국 사회의 특정한 차별적 무의식을 예민하게 감지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아니다. ‘노인’,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용어는 이제 소위 ‘보잘것없어진 익명의 노년’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가령 전·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 같은 ‘유력인사’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노인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정진웅, 2006: 64; 정희진, 2005: 186). 이들은 높은 사회적 위상으로 인해 노인이라는 익명의 범주에 묻히지 않으며, 현직이 아니더라도 대개 과거의 직함이었던 “회장님”, “사장님”, “의원님” 등으로 불리고 또 그렇게 지칭된다.

요컨대 오늘날 노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생물학적 현상을 지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나이와 결합되어 있는 ‘보잘 것없는’ 사회적 위상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지칭어의 사용에는 흔히 그 배후에 한국 사회의 일종의 ‘근대적 신분주의’의 차별적 시선이 깃들여 있다.

이렇듯 노인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어감이 강하다 보니, 이와 결합되는 다른 말들 또한 부정적인 어감을 지닌 용어들이 점점 많아진다. 가령 ‘노인 사장’, ‘노인 국회의원’과 같은 표현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다가오기 쉽다. ‘노인’은 근대적 지식이나 성취에서 소외된 존재여서 사장이나 국회의원이 되기에는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여성 지식인, 게이 지식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노인 지식인’이라는 말은 없다(정희진, 2005: 186). 또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무의식이 ‘노인’을 열정의 주체이기에는 너무 ‘쇠퇴’한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청년의 열정’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워도 ‘노인의 열정’ 같은 표현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제 이처럼 노인이라는 기표의 부정적 색채는 이와 어울리는 부정적 어감의 기표들을 그 주변으로 부른다.

더 나아가 ‘노인’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이 이와 결합되는 말들의 어감을 부정적으로 채색하는 현상도 생겨난다. 가령 근래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대략 원치 않는 사정으로 돌보아 줄 사람 없이 홀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을 상상하게 된다. 이 표현에서 혼자 살지만 넓은 평수의 강남 고층아파트에 사는 노년의 모습을 떠올리는 쉽지 않다. 하지만 ‘독거의 즐거움’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독거의 의미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며 거기에 어떠한 부정적 함의도 담겨 있지 않다. 그런데도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에서 부정적 노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노인’이라는 부정적 용어의 결합이 ‘독거’라는 수식어의 빛깔을 부정적으로 채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회의 일종의 ‘근대적 신분주의’의 차별적 시선이 묻어 있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렇게 지칭되는 대상들에게 한국 문화의 신분차별적 시선을 덧씌우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화는 그만큼 무의식의 차원에서 노년 인권을 위협한다.

3. 연령차별, 젠더차별, 신분차별의 접합: ‘여성 노인’, ‘남성 노인’ 호명에 숨어 있는 차별적 문화적 무의식

학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을 차별적·문화적 무의식의 차원에서 살펴보자. 우선 이들 표현은

노년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어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중년 여성을 ‘여성 중년’이라고 부르거나, 젊은 남성을 ‘남성 청년’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성인의 연령대를 표시하는 지칭어들은 항상 여성, 남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중년 남성’이라는 표현에서 ‘중년’은 ‘남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이 경우 지칭되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유독 노년을 호칭할 때는 ‘남성 노인’의 경우처럼 ‘노인’이라는 지칭어가 ‘남성’이라는 성별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뒤에 배치되어 지칭되는 대상의 ‘늙음’이 강조된다.

이렇게 ‘노인’이라는 기표를 뒤에 위치시키는 어법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대상 인식에 있어 노년이 지니는 이질성을 주목해야 할 우선적인 특성으로 제시한다. 요컨대 ‘여성 노인’,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대상의 인식에 있어 노년의 경우에만 유독 나이를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무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사람들이 ‘여성 노인’, 혹은 ‘남성 노인’이라는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고 ‘노인 여성’, 혹은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즉, ‘노인’이 여성임을, 혹은 남성임을 강조하는 ‘노인 여성’,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은 ‘노인’을 더 이상 성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연령차별적 시선과 충돌한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특히 ‘여성 노인’은 성적 존재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여성’이라

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아동 여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아동은 여성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존재이며, ‘노인’은 여성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존재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이 지금보다 훨씬 강하던 1970년대에도 ‘할머니’ 즉 노년 여성의 흡연은 별로 비난받지 않았던 것도 노년 여성이 가부장적 족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는 더 이상 여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도 점차 비성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언론에 종종 ‘노인 매춘’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 노년 남성들의 성매매가 중년 남성들의 성매매보다 우리 사회에서 더욱 백안시된다는 사실은 노년을 비성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연령주의적 편견이 남성에게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노인 매춘’이라는 말은 있어도, ‘중년 매춘’, ‘청년 매춘’이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영화에서 종종 젊은 여성 주인공의 상대역으로 50, 60대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남성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성적 존재로서의 위상의 훼손 정도가 여성에 비해서는 덜하다. 만일 노년 여성이 ‘호스트바’에 가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는 노년 남성의 성매매 행위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종의 ‘문화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연령주의적 편견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성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

게 되는 시기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항상 연령주의에 의한 여성의 비성적화가 남성의 비성적화에 선행한다 (Songtag, 1997).

따라서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좀 다른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남성성’의 훼손은 나이 들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성취’의 결핍에 의해서도 촉발된다. 버틀러(Butler, 1990)에 의하면 남성성은 육체를 초월해 성취되어야 하는 일종의 추상성이다. 남성은 ‘문명’적 존재로, 여성은 ‘자연’적 존재로 대비되는 가부장적 젠더 담론에서는, 여성성은 몸과 성의 영역에 한정되며, 따라서 여성성의 성취는 여성이 ‘자연’이 일부인 젊은 몸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반면에 남성은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문명’을 성취할 때 남성성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이유에는 연령주의에 더해 ‘남성 노숙인’에 비해 ‘노숙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포함돼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근대적 부문의 사회적 성취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뜻을 담게 된 ‘노인’이라는 기호는 ‘노숙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인 ‘남성’을 수식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기표인 셈이다. 따라서 ‘노인 남성’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노인 사장’이나 ‘노인 지식인’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과 같다. 요컨대 ‘노인’은 이미 근대적 성취에서 신분적으로 왜소해져서 ‘남

성'이 되기에 충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과 남성이 점점 더 비성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현상에는 연령차별적 문화적 무의식과 함께 성별에 따라 달리 작동하는 가부장적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즉, 나이가 들에 따라 '여성 노인'은 여성성 성취의 근간인 '몸/자연'을 잃고, '남성 노인'은 남성성 성취의 근간인 '문명'을 잃는 셈이다. 이렇듯 노년 호명에 있어 연령주의적 차별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항상 이렇게 가부장적 문화적 무의식이나 신분차별적 문화적 무의식과 결합한다.

이는 노년 차별과 노년 인권의 문제가 완화되려면 우리 사회의 연령주의만이 아니라 신분차별적 무의식과 가부장적 무의식과 같은 다양한 층위에서의 차별적 무의식의 완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요컨대 현대 한국의 문화적 환경에서 노년은 이들 다양한 차원에서의 차별적 문화적 무의식의 중첩적 작동으로 인해 '왜소한' 존재로 격하되었으며, 그 결과 노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다른 세대와 동등한 위상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

4. 내부적 다양성, 개별성이 부인되는 '덩어리'로서의 '노인'

법적, 행정적으로 둘 다 '노인'으로 간주되는 각기 65세와 100세인 두 사람 사이에는 같은 '노인'이라는 범주로 묶일 만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단지 나이와 그에 따라 달라지기 쉬운 건강상태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비슷하게 태어나서 나이가 들며 점차 개별성

을 획득하므로 노년에 접어들 때쯤엔 개인별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되기 쉽다. 즉, 노년에는 나이, 건강, 성격, 학력, 재정, 사회적 위상, 사회관계, 가족 상황, 등등 수많은 차원에서 그 내부의 다양성이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도 증대된다. 그래서 노년학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나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는 텅 빈 변수(empty variable)”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이라는 용어는 노년 내부의 방대한 다양성에 눈감게 함으로써 노년에 대한 어떠한 의미 있는 지식도 전해주지 않는다.

한 사회의 지배담론은 항상 다양한 종류의 ‘타자들’ 내부의 다양성을 승인하지 않고 간과한다. 그 결과 다양한 타자들은 지배담론에 의해 “다 똑같은”, 혹은 “고만고만한” 존재로 간주되며, 이렇게 타자화된 사회적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를 승인하지 않는 현상은 인종, 지역, 젠더, 장애, 계급 등의 거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포괄한다.

반대로 이렇게 타자는 어떠한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담론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주체의 범주에 속한 존재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은 쉽게 인식되고 승인된다. 흑인들은, 혹은 노인들은 다 어떻다는 식의 얘기는 쉽게 접하게 되지만 백인들은, 혹은 중년들은 다 어떻다는 식의 얘기를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러한 현상은 주체와 타자 간의 담론권력의 비대칭적 위상 차이와 맞물려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 혹은 그런 외모는

그 자체로 한 개인의 다양한 다른 특성들을 가리는 효과를 낳는다. 즉, 나이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한 개인의 다양한 다른 정체성들이나 특성들을 은폐하는 장막이 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장애인이나 흑인과 마주쳤을 때 그 상대의 수많은 다른 특질들보다 장애 여부나 짙은 피부색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성으로 다가오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사회 속에서 타자로서의 내 존재의 개별성이 인식되고 승인되지 못하는 경험은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기 쉽다. 이는 마치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없을 때 느끼게 될 당혹감도 포함한다. 이렇게 개별성을 부정당하는 경험은 다른 모든 종류의 타자들도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다. 가령 미국이나 서구에서 아시아인은 종종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의 개별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아시아인’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대접받곤 한다. 한국 사회는 인구가 몇 백만이 되는 광역시라도 ‘비서울’이라는 이유로 농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서울 사람들로부터는 ‘지방’ 혹은 ‘시골’로 취급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며 각 노년이 구성해 온 개별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특질들도 ‘노인’이라는 타자의 범주 속에서 묻혀져 쉽게 인식되거나 승인되지 못한다. 한 사회에서 개별적 존재로서의 특질들을 승인받지 못하고 일종의 ‘고만고만한’ 존재들이 모여 형성된 ‘덩어리’로 취급되는 노년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장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5. 지적, 윤리적으로 열등한 타자로서의 노년

이러한 노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 무의식들의 저변에는 무엇보다도 노년을 여러 면에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무의식이 깔려 있다. 몇 년 전 방영되었던 <꽃보다 할배>라는 한 티브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은 70, 80대 나이의 노년 남성 배우들이 유럽 여행 길에서 보여주는 긍정적 태도, 학구열, 도전정신, 배려심 등을 잘 조명했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년 출연자들의 부정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가령 배우 이순재는 걸음이 매우 빨라서 일행이 이동할 때 앞서 걷다가 일행의 시야에서 사라지곤 해서 안내역을 맡은 배우 이서진을 자주 힘들게 한다. 그럴 때면 화면에는 “직진 순재”라는 이를 희화화하는 자막이 뜬다. 이런 “직진 순재”는 결국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혼자 ‘직진’하는 충분히 지적이지 못한 존재이거나, 혹은 다른 일행들의 상황을 살피는 배려심이 부족한 존재, 즉 윤리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파악된다.

또 평소 무릎이 아파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든 배우 백일섭은 캐리어를 들고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 상황에 짜증이 난 그는 부인이 싸 준 커다란 장조림 반찬통을 캐리어에서 꺼내 발로 차서 지하철 승강장에 버리고 가버린다. 여행길을 위해 부인이 정성 들여 싸 준 음식을 발로 차버

리는 행동 역시 윤리적 감수성의 측면에서 모자란 노년의 모습이다.

그런데 만일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인 이서진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그런 문제적 장면은 편집되어 방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장면이 그대로 방영된다면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어 방송 출연금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온라인에서 맹렬한 비난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노년 배우 백일섭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의 문화적 무의식, 즉 노년을 지적, 윤리적 감수성이 모자란, 그래서 종종 ‘접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끔 “나는 그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의 모습이 귀엽고 좋더라”는 식으로 프로그램 속 노년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반응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어리숙한 노년의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하는 것도 그 노년을 나와 동등한 지적, 윤리적 주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귀엽다’는 말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에게나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말이지, 웬만큼 친근한 관계가 아니면 나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존재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친근한 관계도 아닌 노년을 ‘할배’라고 지칭하는 이 프로그램의 제목도 노년을 ‘만만하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를 만만하게 보지 않으면 허락된 적도 없는 친근함을 함부로 행

사할 수는 없다. 요컨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무의식은 노년은 지적, 윤리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며, 이런 풍토에서 비노년 세대가 노년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승인하기는 어렵다.

6. 젊음에 대한 집착과 늙음에 대한 혐오의 무의식

“칠십이 되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 다”라는 공자의 얘기는 한편으로는 노년에 들어서는 개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경지, 즉 문화가 제공하는 일종의 청사진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문화는 노년에 추구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성취나 꿈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멈췄다. 긍정적 노년에 관한 문화적 지침들이 ‘증발’했다고나 할까.

사라져가는 노년의 청사진을 채우는 것은 근래 들어 ‘젊은 노 인’, 혹은 ‘중년의 끝없는 연장으로서의 노년’의 이미지들을 흔히 접하게 된다. 이제 젊음의 매력을 전시하는 소비자본주의 시대 의 욕망은 늙음으로부터 도망쳐, 대놓고 ‘젊은 할머니/할아버지’ 와 같은 형용모순을 꿈꾼다. 각종 미디어에는 시니어 모델, 액티 브 시니어, ‘철인 할머니’ 등등 나이에 맞서 젊음을 유지하는 모 습을 칭송하는 이미지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넘쳐난다. 이제 주변 에서도 검버섯이나 주름과 같은 노화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인들 의 노력도 낮설지 않다.

이런 문화적 변화는 점점 노쇠함이나 죽음을 연상시키는 기호들 을 일상에서 추방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가령 노년에 미리 수의를 마련하고 스스로 간수하던 풍습은 이제 적어도 도시에서

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장례 절차는 점점 더 간소화되고, 추모 공원이나 묘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쓰고 점차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제 노년이 연상시키는 늙음, 노쇠, 죽음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그래서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젊음에 대한 집착 현상은 노년 혐오 현상과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가령 젊음 늘리기의 문화적 각본이 매력적으로 다가올수록 늙음과 노쇠함에 대한 혐오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젊음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강박을 가파르게 증폭시키는 오늘의 문화는 우리 안에 노년 혐오의 문화적 무의식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다. 혐오의 대상을 인권의 주체로 승인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젊음에 대한 강박적 욕망과 무의식은 이렇게 노년을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기 어려운,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7. 노년은 ‘의미’가 증발한 ‘잉여’의 시간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노년을 지적, 윤리적으로 열등하고, 근대적 세계에서 소외되어 이제 점점 쇠퇴해 갈 일만 남은 일종의 잉여로 상상하는 문화적 무의식을 키워왔다. 그 결과 노년은 단지 ‘시혜’와 ‘돌봄’의 대상이지 삶에서 다양한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승인받지 못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정책이나 학문적 실천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의미’의 영역을 이리저리 비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노년학에서 그간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또 가장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 된 주제는 ‘주관적 만족도’이다. 이런 현상은 그 자체로는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 측정의 대상으로 일관되어 온 연령집단은 ‘노인’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성별,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범주를 통틀어 살펴봐도 이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상이한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상이한 학문적 관심을 유도한다. 다른 연령집단들도 간혹 삶의 만족도 측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나 학령기 아동들은 그들의 성취나 발달의 정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또 성인들은 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능력이 종종 측정이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와 비교해 노년 세대의 삶에 관한 관심은 항상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 문제로 회귀한다.

노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과도하고도 집중적인 관심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노년을 삶의 다른 의미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일종의 ‘문화적 황무지’로 간주하는 일이 된다. 끊임없이 삶의 만족도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노년학도 노년의 삶을 증류시켜 ‘만족’이라는 최소한의 ‘본질’만을 남긴다. 요컨대 이제 노년을 ‘만족’ 이외에는 추구할 만한 어떠한 의미도 남아있지 않은 잉여의 시간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무의식이 확산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무의식이 이제 ‘문화적 황무지’에 접어든 ‘잉여’로 간주하는 노년이 인권의 주체로 승인되는 것 또한 지난한 일일 것이다.

8. 타자와의 ‘수평적 공존’을 위한 과제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노년에 대한 차별적 무의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노년 인권 문제가 널리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년이 지적, 윤리적으로 열등하며 근대적 성취로부터 소외되고, 의미로 충만한 삶으로부터 점점 밀려나 사라질 일만 남은 잉여로 간주된다면, 그런 노년을 비노년 세대가 자신들과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권’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면 타자로서의 노년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에는 모자란 존재여서 인권의 주체로서도 충분치 못한 존재가 된다. 따라서 노년을 이질적이고 열등한 타자로 형상화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무의식을 타파하려는 노력 없이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원을 중심으로 노년 인권 문제에 접근해 보려는 시도들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약자를 타자화하는 현상은 모든 지배 문화의 속성이지만, 한국 사회는 근래 들어 여러 영역에서 차별의 무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듯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수평적으로 공존’하기보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 ‘수직적 위계’의 높은 자리, 즉 남들을 차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한국 사회에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지닌 특성들은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다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수직적 위계서열의 아래에 자리한 ‘열등함’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수직적 위계의 맨 아래 위치하게 된 존재들은 ‘인권’과 ‘존엄’의 주체로 승인되지 못하고 ‘무시’, ‘혐오’,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자뺏기 게임’ 방식의 경쟁을 강제하고, 또 그 경쟁의 승자가 승리의 과실을 거의 독차지하도록 하는 공고한 사회구조와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해 차별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고통을 감내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감내한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결실로 얻은 성취와 성공은 결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획득한 성취는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므로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 즉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젠더, 계급, 재산, 직위, 학력, 거주지역, 외모, 연령, 성정체성 등등 일상의 수많은 영역에서 차이들이 수직적으로 배열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위계가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문화적 토양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라나기도, 모자란 타자로서의 노년이 인권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기도 매우 어렵다.

인권 보호의 대상은 항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이다. 그래서 ‘재벌의 인권’, ‘가부장의 인권’ 같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젠더, 연령, 인종, 계급, 장애, 성적 취향 등 무수한 차원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려면 우리 사회가 경쟁을 통한 상승을 꿈꾸며 약자를 차별하는 사회로부터 차이의 수평적 공존을 꿈꾸는 사회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근본적 방향 수정이 없이, 가령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근원적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모든 수평적 차이가 수직적으로 배열되는 문화 풍토에서는 인권 문제의 주체들이 인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외려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의 문제는 엄밀하게 보면 '폭력적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차별적 욕망과 무의식에서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경쟁과 승리와 성공과 차별을 꿈꾸는 우리 사회의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수평적 공존을 꿈꾸도록 바꾸어나가고, 그런 꿈을 보듬을 수 있는 좀 더 평등하고 덜 경쟁적인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노년 인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문제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봉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와 진전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원영희(2025)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한 필수 과제”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노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진웅(2006). 노년의 문화인류학. 파주: 한울.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 Butler, J.(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Neugarten, Bernice L. 1968. “Adult Personality: Towards a Psychology of the Life Cycle.” In Reading in General Psychology, edited by E. Vinacke. New York: American Book Co.
- Sontag, S.(1997). The double standard of aging. In M. Pearsall(Ed.), The other within us: feminist explorations of women and aging. Boulder: Westview Press.



노인 차별, 하나씩 답하기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 차별, 하나씩 답하기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글을 열며

노인. 격식을 갖춘 예의 있는 용어라는 생각과 더불어 정서가 느껴지지 않는 담담한 호칭이다. 특정한 나이를 넘어서(주로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또는 일정한 기간 이상을 생존해 온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노인과 기억할 만한 경험이나 추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인을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체화하면 대부분은 소중한 추억을 쉽게 떠올리고, 꽤 많은 이야기를 소환해 낸다. 추억 속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때론 한여름 더운 바람을 달래며 살랑이던 부채 끝으로, 때론 접고 또 접은 지폐 몇 장을 주머니 속에 찔러 주시던 투박한 손마디의 질감으로 기억된다. 이처럼 사적인 관계에서 노인은 주로 희생, 사랑, 온정, 지혜 등등 긍정적 이미지들로 구체화된다. 반면에 사적 관계의 고리가 제거되고, 노인 일반으로 익명화되는 순간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하던 따뜻한 시선은 온기를 잃는다.

언제,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스치는 거리의 수많은 노인은 그저 느린 걸음으로 행인의 동선을 꼬이게 하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

나는 행색 때문에 시선을 주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존재로 비친다. 먹고사는 것이 여의찮은 고단한 삶은 노인의 과거가 빛은 결과인 듯하고, 젊은 세대의 어깨에 지워진 부양 부담은 취약한 노인들로 인해 가중되는 것만 같아 분노한다. 쓸모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는, 무의미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노년의 인생은 이제 무대의 중앙에서 비켜나 침묵하기를 요구당하는 것 같다.

이 글을 통해, 노인의 삶은 젊은 세대의 삶과 같을 수 없고, 누릴 수 있는 기회 또한 동일할 수 없다는 차별적 시선이 어떤 이유로 생겨나고 강화되는지, 또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차례대로 답해 보고자 한다.

2. 노인 차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1) 편견

연령에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얼마간 차이를 보인다. 나이 든 독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안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비교적 존경받는 모습으로 기억되기 쉽다. 굳이 자신의 가치와 쓸모를 증명하지 않고도 그로부터 연유된 가족, 살아내신 시간만으로 노인의 가치는 가볍게 평가되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개인의 쓸모를 판단하게 되면서 노인을 향한 시각 또한 변화되었다. 노인이 살아온 세월은 그만큼의 노고와 지혜로 은유되고,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되던 시간은 이제 과거로 묻혔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같은 이름으로 2025년을 사는 노인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달라져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일로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구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이 유용함을 증명할 때만 의미 있는 노년으로 평가받는다. 누구를 돌보거나, 일할 만큼 건강하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의 노인에게 부여되었던 존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취약한 신체에 갇힌, 한 인간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아이가 자란 시간은 성장의 시간,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강인해지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노인이 살아온 시간은 쇠퇴의 시간, 인지적 예리함이 무뎌지고, 신체적 결손으로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기간으로 조명된다. 이와 같이 사람을 향한 생각 중 연령, 성별 등을 기준으로 개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일반화된 신념을 편견이라 한다. 편견은 판단이라기보다 감정이나 정서에 가까우며,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편견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2) 고정관념

편견은 한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이미지 즉 고정관념에 근거한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요 주체는 대중매체이다. 대중매체 속의 노인은 폐지를 줍는 가난한 사람,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미지화된다(원미라·이광자, 2016). 노인은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살게 되고, 혼자 살아가는 삶의 양상 또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

인으로 분류되는 순간 개인의 서사와 특성은 의미를 잃고,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외로운 모습이 사진처럼 떠오른다. 이와 같이 특정 집단을 생각할 때 사진처럼 떠오르는 이미지인 고정관념은 한 집단을 향한 신념이 하나의 상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집단의식 속에 노인은 어떤 사회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가장 정확히 드러낸다.

3)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언어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반응, 편견을 보여준다. 고정관념은 편견을 시각화한 것이며 동시에 편견을 만드는 연료가 된다. 한국 청소년이 생각하는 노인은 보수적이고, 매력이 없고, 고지식하며, 쇠약하고, 비생산적이고, 지루하며, 소극적이고, 우울한 사람이다(한정관, 2003; 2009). 노인에 대한 편견은 대중의 언어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관련 기사의 댓글 속에 등장하는 노인의 이미지는 주로 힘든, 무식한, 나쁜, 무서운, 힘없는, 아픈, 이상한, 심한, 불쌍한, 부끄러운의 형용사로 묘사된다. 등장하는 빈도수가 높은 상위 50위까지의 표현 중 긍정적인 것은 훌륭한, 당당한의 두 가지에 불과했다.

또한 댓글 속에서 노인은 틀딱, 꼰대, 늙은이, 할배 등으로 지칭되고, 틀딱은 미치광이, 노망과 빈번히 결합되어 나타나며, 노인네는 꼰대, 무식한, 이기적 등의 부정적 형용사와 강하게 연결되어 사용되었다. 꼰대 또한 노인을 뜻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며,

냄새, 요금, 승차, 벼슬, 불편 등의 표현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순태 외, 2021). 이와 같이 노인을 향한 편견은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비우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일단 형성된 편견은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특성이 노인에 대한 편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수정하기보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만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노인 또한 자신을 향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성 노인에게 노인이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남성 노인에게는 정서적으로 비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특히 나이 들어감에 따라 노인을 향한 노인 자신의 부정적 인식은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홍현방, 2009).

3. 노인 차별, 어떤 특징 갖고 또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1) 노인 차별, 이해의 시작

노인을 대하는 개인의 행동은 나이 들어감 또는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 구속된다. 과거 노인의 기척과 무심히 내뱉는 몇 마디에 가족이 주의를 기울이고, 당부하는 바를 따랐던 것은 그 당시 암묵적으로 합의된 노인에 대한 공동체의 시선과 정서를 반영한다. 이처럼 대상을 향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판단은 노인과 상호작용하는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편견이 상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신념에 해당하는 반면에

차별은 이를 행동으로 외연화한 것이다. 차별은 개인의 특성, 능력, 경험과 관계없이 그가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상이나 기회로부터 그를 배제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즉, 그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별, 연령, 출신 민족이나 지역, 장애 여부 등의 배경을 기준으로 정당히 누려야 할 기회와 권리를 빼고 박탈하는 것이 차별이다. 특히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집단을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권력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다.

차별적 행위는 개인, 집단, 조직, 국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대할 때도 누가 차별을 하고 또 차별을 당하는가는 각각의 개인이 속한 두 집단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영화 ‘플랜 75’의 한 장면에서 뉴스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칭 플랜 75가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심각해지는 인구 고령화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가는 75세가 되는 노인은 죽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자에게 죽음 준비금을 지원한다는 가상의 이야기이다. 일할 수 있다는 기대로 죽음 신청을 보류한 주인공은 일자리 찾기가 번번이 거부되면서 “손주들을 생각하면 신청해야 할지도 모르잖아”라고 플랜 75의 신청을 놓고 고민한

1) ‘플랜 75(Plan 75)’는 2022년 개봉된 일본 영화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발적 안락사라는 가상의 제도를 통해 노년의 삶과 존엄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다. 영화 속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주체의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국가는 사회적 쓸모보다 부담이 큰 존재라는 이유에서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죽음을 권유하며, 생존에 대한 포기가 마치 권리인 듯 종용한다. 상점의 주인은 별다른 질문 없이 외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주인공인 여성 노인에게 “우리는 어렵겠네요”라는 한마디로 일자리 주기를 거부한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통치체제로서 국가, 직원 고용의 권한을 지닌 젊은 가게 주인은 여성 노인인 주인공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정치·경제·사회적 힘을 갖는다. 국가라는 통치체제, 상점 주인인 개인 모두 권력 구조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기회, 일할 기회로부터 주인공을 배제할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힘의 차이로 인해 주인공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노인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

2) 노인 차별이 갖는 특성

차별의 첫 번째 특징은 집단성이다. 이는 편견이나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는 개인이지만, 그가 차별받는 이유는 그 개인의 특징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이라는 차별의 특성을 말한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2)’에서 72세 여성 데이지는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들로부터 운전을 금지당한다. 데이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고용한 흑인 운전자 호크를 환영하지 않고, 연어 통조림 하

2)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Driving Miss Daisy)’는 1989년 개봉된 영화로 보수적인 백인 노부인 데이지와 흑인 운전자 호크의 우정과 인종 화해를 주제로 한다.

나가 사라지자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한다. 영화 속에서 데이지는 여성 노인이라는 집단성으로 인해 운전하기에는 신체적, 인지적으로 취약한 존재로 취급되고, 운전할 기회를 차단당한다. 동시에 데이지는 호크가 흑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연어 통조림을 가져간 사람이 호크라고 단정한다. 아들에게 던지는 “그 사람들 버릇 알잖니?”라는 데이지의 말은 그가 호크를 도둑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호크의 집단적 정체성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같이 차별은 특정 집단을 향한 부정적 정서와 판단이 집단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개인에게 전위된 것이다.

둘째, 차별은 완강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 집단에 대한 신념이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되면 개인은 자신의 신념에 정서적 애착을 발달시킨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거나, 신념에 위배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신념에 대한 애착을 쉽게 파기하지 않는다. 영화 드라마 이빙 미스 데이지의 말미에 데이지는 호크와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이제 데이지에게 호크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된다. 데이지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는 장면을 통해 영화는 데이지가 흑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호크를 향한 데이지의 신뢰, 흑인 차별에 대한 데이지의 자기성찰이 흑인 집단에 대한 데이지의 정서적 반응이나 신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호크를 고용

하기 전에도 데이지는 이미 아이델라라는 흑인 가사도우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호크에 대한 태도는 흑인 집단을 향한 부정적 정서에 뿌리를 두었던 것처럼 말이다.

셋째, 차별은 부정적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표적이 된 집단은 본래 열등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는, 부정적 내용들로 구성된다.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영화 속에서 백인 경찰이 “이런 고급 차에서 뭐하는 거지?”라고 호크에게 묻는 장면은 흑인은 고급 차를 소유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빈곤한 집단이라거나, 흑인은 범법적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고급 차를 가질 수 없다는, 경찰관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고스란히 전달한다. “유대인들은 인색하다고 하는데”라는 호크의 발언 또한 특정 민족에 대한 신념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차별은 표적 집단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와 신념에 기초한다.

3) 노인 차별 구분 짓기

차별적 행동을 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은 개인적 차별, 제도적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별은 주로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차별은 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의 목적성이나 인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종 개인이 공동체의 규범과 관습을 따르는 것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 대한 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 예컨대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요양원에 모신 자녀는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권리를 노부모로부터 박탈하는 차별을 범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는 노부모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자신들의 결정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차별의 대부분은 문화, 관습 등과 결속되어 있다.

제도적 차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다양한 삶의 기회들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회적 차원의 차별이다. 사회 제도에 의한 차별은 관행적이고, 적법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물론 차별을 당하는 개인 또한 제도적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60세의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정 연령에 이르면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정년 제도는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의 일할 기회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제도적 차별이다. 최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년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정년이 높아진다고 해도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을 일자리로부터 퇴출하는 정년제도는 노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노동 기회의 면에서 제도가 고령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합법화한 정년 제도는 제도적이고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떤 제도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노인 등 특정 집단에 차별적인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제도적이고 간접적인 차별로 분류된다. 요즘 어느 곳에서든 흔히 마주하는 키오스크는 누구를 배제하거나 다르게 처우할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노인

이나 시각 장애인은 사용하기 어려워 이들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기회를 제한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끝없이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자동응답서비스(ARS) 역시 노인이나 청각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의 재화나 서비스 이용 기회를 차단하는 키오스크, ARS 서비스는 제도적이고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4. 노인 차별, 왜 일어나고 또 무엇을 남기는가?

1) 노인 차별이 일어나고 지속되는 이유

차별은 유쾌한 행동은 아니다. 타인을 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거나 타인에게 비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즐겁지 못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진다. 어떤 이유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또 유지되는가?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이 복잡한 만큼 차별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가장 고전적인 설명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차별의 원인을 찾는다. 이에 따르면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좌절의 원인에 직접 대항하기 어려울 때 좌절에서 오는 공격성을 표출할 대상을 찾는다. 이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은 공격의 대상을 고르는 단서가 되고, 선택된 희생양은 차별을 당하게 된다. 영화 *드라이빙 미스 테이지*에서 연어 캔 하나가 사라지자 이는 당연히 흑인인 호크의 짓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비난한 테이지의 행동은 아들의 강요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좌절한 테이지가 흑인인 호크를 희생양 삼아 그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좌절감

을 해소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이 노동 시장 조건이나 자신의 역량은 외면한 채 노인 노동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은 것처럼 분노하고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차별이란 사회적 규범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백인 중심의 공동체에서 흑인을 열등하게 처우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이자 당연한 질서이기 때문에 흑인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시 말해 규범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화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공동체의 규범이자 가치로 내재화한 개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차별적으로 처우한다는 것이다. 차별은 특히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준거집단의 규범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백인 중심의 공동체에서 흑인 차별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준거집단의 규범을 거스르는 일탈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은 흑인 차별에 동참함으로써 준거집단의 구성원으로 소속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영화에서 흑인은 백인처럼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이 데이지의 준거집단인 미국 남부 백인 공동체의 규범이기 때문에 데이지 또한 부당하게 호크를 도둑으로 지목한다는 것이다.

권력 갈등적 관점은 편견과 차별을 권력관계의 결과로 이해한다. 지배적 위치에 있는 집단이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을 발전시키고 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고정관념은 그 집단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예를 들면, 노인은 건강하지 못하고,

힘도 없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취약하다거나,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등 인지적 기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편견은 정년이 지난 고령 노동자를 일자리에선 퇴출하는 정년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권력 갈등적 관점은 특히 편견과 차별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을 차별하는 연령주의는 노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지배집단에 경제적 이득을 준다. 노동자의 임금이 근무 연수 즉 호봉 등에 의해 결정되는 한국에서 고령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신체적이나 인지적으로 능력이 감퇴하고 노동 효율이 낮아진다는 편견이 반영된 정년제도는 고임금의 고령 노동자를 정해진 나이가 되면 퇴출하는 차별적 행위를 통해 고용주가 임금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다.

차별이나 편견이 경제적 이득과만 연결된 것은 아니다. 차별은 힘을 지닌 집단에 지위의 특권 또한 부여한다. 예컨대 외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공유한 때도 나이 든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 간의 지위는 동일하지 않다. 작업을 지시하거나 동료 노동자를 관리하는 직무는 주로 젊은 노동자에게 맡긴다. 직무의 차이가 없어도 ‘많은 나이’는 노동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낮은 권력으로 연결된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나서고 그러세요’라는 젊은이의 흔한 편견은 고령 노동자는 같은 동료임에도 젊은 동료와는 다른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차별을 가하는 집단은 차별을 통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도 한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로 비유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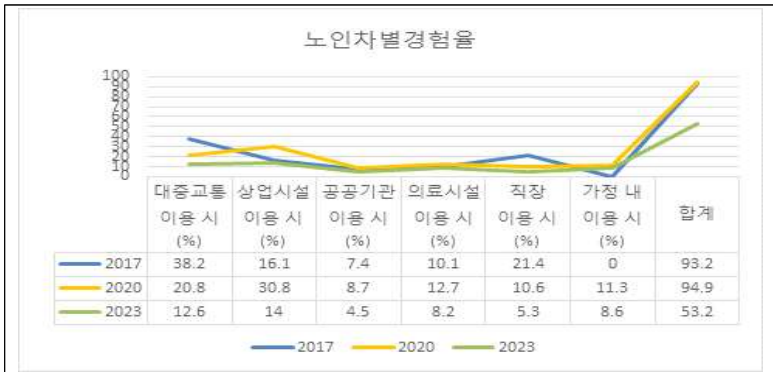
청년 실업 문제는 관련 정책에 책임이 있는 정부나 행정가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일부 언론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 노동자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고 호도한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의 프레임에 갇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원인을 고령 노동자에서 찾으려 한다. 노인은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 한다는 편견을 바탕으로, 청년은 노인의 이와 같은 성향이 자신들의 취업 경쟁력을 낮추어 청년 실업을 심화한다고 비난한다. 결국 정부로 향해야 하는 화살은 노인을 겨냥하게 돼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는 데한몫을 하게 된다. 17대 총선 당시,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이고, 60대 이상은 곧 무대에서 퇴장할 사람들이니까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시라는 한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미래는 청년 세대에게만 의미를 갖고, 노인은 미래를 기획할 주체가 아니라는 편견에 근거해 노인의 선거권을 부정한 사례이다. 이 발언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고령층의 표가 보수당에 집중될 것을 경계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차별은 다른 집단을 차별할 힘을 지닌 권력 집단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여 권력 집단의 힘을 강화한다. 지배집단은 강화된 권력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한 집단을 다시 차별하고 결국 두 집단의 힘의 격차를 점증시키는 순환적 과정을 되풀이한다. 차별의 끝에는 체계적인 배제와 억압으로 저항의 동력마저 상실한 희생당한 집단과 무소불위의 힘으로 피차별 집단에 차별의 검을 휘두르고 이득을 수확하는 권력 집단의 철옹성만이 남게 된다. 차별의 역사만큼 차별에 대

한 비판과 저항의 시간 또한 장장함에도 차별이 끈질기게 생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노인 차별이 남기는 것

차별은 개인이라는 실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거부이다. 대상이 실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와 관계없이 당신을 나와 동일한 사회적 존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인정과 무시를 전달하는 사회적 언어이다. 사회적으로 부정당하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온전하기 어렵고, 존재에 대한 체계적 무시와 불인정은 차별을 내재화하여 자기혐오로 연결되기도 한다. “차가 없으니 버림받은 기분이야”라는 영화 속 데이지의 한탄은 차별이 단순한 운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실존적 문 제임을 드러낸다.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20, 2023)을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한 가지 이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인의 총비율은 2017년 93.2%, 2020년 94.9%, 2023년 53.2%로 확인된다. 노인의 절대 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이라도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노인의 누적 총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수의 노인, 즉 노인 보편의 일상적 차별 경험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이다. 견고했던 가족관계, 부모로서의 권위는 연령에 반비례해 무너져 내린다. “상의도 없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버린 자녀들이 꽤씩해 소리를 지름³⁾”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가족 내에서조차 노인은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주체로 비노인 가족원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공적인 사회관계에서도 노인은 비노인과 사회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 듯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걸러지고 공간적으로 고립된다. “커피숍에서 (젊은 애들이 싫어하니까) 테이크아웃 하도록 권유”받은 노인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될 것을 부당하게 요구받고,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머물 권리가 조차 박탈당한다. 고용 관계에서의 차별은 직접적이고 더 잔인하다. “나이 때문에 계속 거절당해 이젠 더 이상 구직도 시도하고 싶지 않음”, “자격증이 있어도 젊은 사람을 뽑지 늙은이는 설거지밖에 안 시킴”이라는 노인의 고백은 채용 단계부터 연령은 기회를 얻거나 잃게 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채용된 경우에도 고령 노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인지를 판단하는, 즉 직무의 유형을 가르는 준

3) 따옴표 속의 표현들은 김주현·주경희·오혜인(2013). <표 2> 300~303쪽에서 직접 인용함.

거가 된다.

차별적 관행은 마치 당연한 듯 일종의 문화와 관행으로 존재하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역전을 낳는다. “말해 봤자 슬픈 것만 돌아와서 이제는 말 안 함”과 같이 차별이 지속되고, 경험이 누적되면 개인은 차별에 무기력해지고 저항할 힘을 잃는다. 차별에 따른 무기력과 무저항이 지속되면, 노인 당사자는 노인에 대한 강한 편견과 차별적인 외부의 시각을 자기 신념의 일부로 내재화한다. “뭔가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조용히 넘어감”이라는 진술은 노인 스스로 노인 차별적 규범을 내재화하여 자기혐오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별적 경험이 많은 노인 집단일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는 노인 차별이 자기혐오로 발전되는 비극적 경로의 끝을 가늠하게 한다(최혜지 외, 2021).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차별받는 노인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이는 곧 차별의 부정적 경험에 노출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령뿐 아니라 성별, 장애 유무, 성적 취향 등 소수자성은 다양한 준거를 토대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대인의 대부분은 노인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하나 이상의 소수자성을 정체성의 일부로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용은 구성원 모두를 차별의 제물로 삼는 파국으로 종결된다. 한국 사회에 남겨진 단 하나의 선택지는 누구에 대한 차별이 아닌 차별 자체를 축출의 대상으로 표적하는 것뿐이다. 이 글에서 담고자 했

던 차별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그것이 차별에 민감한 사회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이다.

참고문헌

- 안순태·이하나·정순들. (2021).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한국노년학, 41(4), 505~525.
- 원미라·이광자. (2016).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험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5(3), 195~206.
- 김주현·주경희·오인혜. (2013). 경제활동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60, 287~322.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최혜지·원영희·이혜연. (2021). 노인 학대와 차별에 기초한 잠재계층 유형과 노인 자살생각. 한국노년학, 41(5), 927~945.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4), 181~194.
- 한정란. (2008). 연령집단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인구교육, 1(1), 61~84.
- 홍현방. (2009).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이미지 탐색연구. 노인복지연구, 44, 327~344.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 자기결정, 그리고 존엄

권금주(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 자기결정, 그리고 존엄

권금주(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1. 들어가며 - 보호의 이름 아래 감춰진 권리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2」에 소아외과 의사 안정원에게 초등학교 6학년 한준이가 어머니와 함께 외래 진료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의사: 한준이 잘 지냈어?

한준: 네

엄마: (아들의 말을 가로채며) 잘 지내긴 했는데 살이 많이 쪼었어요.

의사: 그래도 수치는 다 좋네요. 한준아 배 땅길 때 있어?

한준: 어~ ~

엄마: (아들의 말을 가로채며) 그럴 땐 없었어요.

의사: (엄마 바라보며) 초음파상으로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준 바라보며)

너 그래도 살은 좀 빼야 돼. 뭐 좋아하는 운동 없어?

엄마: 야구. 하는 거 말고 보는 거

의사: (못 참겠다는 듯) 저기 어머니 한준이 6학년?

한준: 네

의사: 6학년이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생각 표현할 수 있어요!

엄마: 아~ 아니에요!

이 장면은 한 사람의 자기결정 권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머니는 왜 아들의 말을 가로채며 대신 대답했을까? 어머니의 행동은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자녀가 자신의 몸과 감정을 스스로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로막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장면은 결코 어린이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노인에게도 돌봄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자기결정을 제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효 문화와 가족 중심의 가치가 강한 사회일수록 노인의 의사보다 가족의 판단이 우선되기 쉽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자.”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겉으로는 사랑과 걱정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결정권의 박탈’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돌봄을 받는다’ 라는 말을 ‘자기결정권의 이양’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주인공 알란은 양로원에서 준비한 100세의 생일날 지루한 일상으로부터 탈출해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며, 어떻게 사느냐도 내가 결정한다.”며 양로원을 몰래 나와 모험을 시작한다. 그의 철학과 선택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많은 사람들이 알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고 행복’이며 내 삶과 행복이 억눌리고 감금되는 것은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알란의 자녀이거나 돌보는 사람이라면 그의 탈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알란의 자녀이거나 그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그의 결정은 ‘위험하다’거나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그를 찾아 다시 양로원으로 데려올 것이다. “세상은 위험하니 안전한 양로원에서 지내는 것이 당신에게 좋아요”라며 그의 결정을 무시할 것이다. 책 속에서 알란의 모험은 통과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만약 그가 내 아버지라면 그 자유를 ‘무책임’이라 불렀을지도 모른다. 사랑과 걱정은 종종 통제로 변한다. 상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랑의 선택이 어느새 상대의 의견과 결정을 제한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르게 하는 통제로 전환되기 쉽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린다.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는 “위험하니까”, “불편할 거니까”라는 이유로 노인의 선택을 제한하며, 그 결정을 대신하고 책임지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책임을 대신 진다는 말 속에는 “이제 당신은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다.

결국 ‘선의’라는 이름의 책임이 노인의 권리를 지워버린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한 자기결정을 존중받을 존재임은 망각하고 ‘옳은 결정’, ‘바른 선택’을 할 능력에만 초점을 두어 그들의 자유권을

본의 아니게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존중하기 위한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2. 자기결정권의 이해 -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자기결정권(自決定權: 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신체, 감정, 가치와 행동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자율성(autonomy)’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칸트는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 법칙을 부여하는 존재(autonomy)”라고 설명하며, ‘자율적 인간관’을 언급하였는데, 이 개념이 자기결정권의 철학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데시와 라이언(Deci & Ryan, 1985)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인간은 외부의 통제가 아닌 내부의 선택과 자율성을 느낄 때 더 깊이 동기화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때 왜 의미를 느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인간 존재의 핵심적 본질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간 존엄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6) 제1조에서도 모든 개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WHO 「고령화와 인권에 관한 원칙(1991)」에서도 노인은 “자신의

삶, 치료, 돌봄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이 단순히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의 주체이며, 나의 결정은 나에게 속한다”는 인간존엄의 원리를 담고 있다.

법적으로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사적인 사안에 대해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개별적 존재로 자신의 의지와 가치에 따라 삶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김효정, 2019).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2005년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에서 제5조의 표지는 ‘자율성과 개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 결정을 하는 사람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언급과 함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타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각자가 자기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자율성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타인의 도움이 개입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권리’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자기결정은 ‘자기가 하는’ 결정이다. 즉 결정의 주체가 ‘자기’이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기결정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설에 가고 싶지 않은 노인이 자녀의 강압에 못 이겨 시설에 가기로 결심했다면 명목상으로는 ‘자기’가 결정한 것이고 실재는 자녀의 결정에 가깝다. 자기결정은 ‘자기’가 하는 결정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결정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관한 결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자기 관련 사안’에는 전통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 등이 포함되어 왔다. 예를 들어 요양원 입소 여부는 노인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가 대부분 결정하며, 입소 이후 요양원 생활의 전반적인 결정 또한 요양시설이나 가족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인은 자기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무력감의 굴레에 갇혀 있다.

노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정책·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누가 누구의 돌봄을 받게 되면 돌봄 제공자가 돌봄을 받는 사람을 통제할 권력을 갖는다고 여기며 당사자 대신 결정하는 문화가 강한 편이다.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보면,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는 위계적 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결정권 또한 주로 부모·교사·상사 등 상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결정장애’, ‘헬리콥터맘’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기결정과 주체적 삶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의 관계에도 스며들어 있다. 돌봄 제공자는 자신이 상대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필요를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노인의 의사를 묻기보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자기결정권에서 ‘권리’를 살펴보면 ‘자기결정’ 그 자체로는 권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는 규범적 정당화의 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이 타인의 간섭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이 내포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는 자기선택과 결정이었지만 그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¹⁾ 제정과 시행 이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까지 보장받게 되었다.

자기결정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윤리적 규범에서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가 작동하며, 이로써 그 권리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인정된다. 그러나 노인의 자기결정은 여전히 권리로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에서 노인이 입소

1)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전의 식사 습관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여러 제도적 이유와 현실적 한계로 인해 그 권리가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 논의의 출발점은 언제나 주체인 노인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내리는 결정들이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

세 번째로, 자기결정권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각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이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평등하게 지니지만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평등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는 자기결정권을 단순한 선언적 권리에 머물게 해서 안 되며,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규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예를 들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권리가 부정되지 않도록 사회와 개인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제도와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노인의 자기결정권 - 보호와 존중 사이에서

성인 자녀들이 종종 이런 고민을 나눈다.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아 자식 가까운 곳에서 살자고 해도 ‘여기가 편하고 좋다’며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90대인데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다.”, “당뇨 수치가 높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한다.”, “걷는 게 불편한데도 실버카트를 밀고 동네에서 가장 싼 가게를 찾아 장을 본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분과 재혼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부모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성인 자녀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하다. “내가 말한 대로 하면 편하고 좋을 텐데 노인은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이런 불평이 생기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이 다치거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기에 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돌봄의 한계 등 자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 이유가 숨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면서도 그 행위를 ‘부모를 위한 선택’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설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에는 8시 취침, 간식 금지, 산책은 어쩌다 한 번인 다이아몬드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메르타 할머니가 등장한다.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를 보던 메르타는 감옥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며 잃어버린 일상의 자유에 분개하고, 요양원 친구 네 명과 함께 강도단을

결성해 감옥에 가기 위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메르타와 다섯 친구의 행동을 보며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
는가?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존중받으며 누리
고 싶은 마음이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의지를 표출한 것이며, 개
인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도전을 행동으로 옮
긴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내 부모가, 내가 돌보는 노인이 메르
타 할머니와 친구들처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
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동의하며 지지할까?

오늘날 노인 돌봄의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주간
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서비스는 대체로 노인의 개별적 욕구보다
기관의 규정과 집단화된 프로그램에 맞추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
다. 노인의 선택이 존중받기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우선시되는
지금의 제도를 보며 다시 한번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되새겨 보
게 된다.

일본 요리아이 총괄소장인 무라세 다카오(2024)의 저서 「돌봄,
동기화, 자유」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할머니는 배설보조를 철저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입어야 했으나 이도 싫어하셨다. 그래서 소변이 나오면 속옷과 바지가 통째로 젖어버렸다.(중략)

소변에 옷이 젖어야 마지못해 옷 갈아입는 것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오줌을 싸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이 배설을 도와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싸버리는 상황을 선택한 할머니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 돌보는 우리도, 돌봄을 받는 할머니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²⁾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할머니가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면 시설은 “기저귀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설득하려 할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다”며 어떻게든 기저귀를 입도록 권유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보호자인 자녀를 통해 설득하고,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퇴소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기저귀 착용을 강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리아이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다. 팬티의 가랑이 부분을 두 겹으로 만들어 그 사이에 요실금 패드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는 비밀팬티를 만들어 할머니에게 입혔다고 한다. 다행히 비밀팬티는 그녀에게 잘 통해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생활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돌봄의 한계를 이유로 돌봄 받는 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우리의 현실에 울림을 주는 장면이다.

2) 무라세 다카오(2024). 「돌봄, 동기화, 자유」, p.42

엘렌 랭어(Ellen J. Langer)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한 그룹은 화분을 직접 돌보게 하고, 다른 그룹은 직원이 대신 화분을 관리하게 했다. 그 결과,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화분을 돌본 노인들이 더 쾌활하게 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의식의 집중을 가져오고, 이런 집중이 활동성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³⁾

이처럼 노인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이자 욕망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의 노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의 생애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감수성에서 출발한다.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는 지금, 그만큼 1천만 가지의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양한 노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기본 인식이다.

TV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노후의 삶도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반면<눈이 부시게>에서는 치매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노인이 나온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노인은 “내 삶은

3) <https://www.khan.co.kr/article/201105062123315>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중략)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노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존엄과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다. 결국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삶 전체’를 존중하며, 끝까지 그들의 삶이 존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며 살게 하는 것이다.

4. 노인의 의사결정지원 - 함께 결정한다는 것

보일(Boyle, 2014)은 주체성을 ‘삶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내 주변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을 유용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체성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자기결정이 가능해야 한다.⁴⁾ 그러나 노인들은 종종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에 놓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노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은 노인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여 상대방(서비스 제공자, 공무원, 가족 등)에게

4)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10383&boardNo=7610388>

전달하는 지원을 의미한다. 종종 의사결정지원을 그 사람을 대신하여 결정하는 대리적 의사결정(substituted decision making)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의사결정지원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다. 즉, 의사결정의 주체는 여전히 노인 자신이며, 지원자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김효정, 2019)

그러므로 의사결정지원은 단순한 의사소통 지원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일부 노인은 이러한 정보 접근성이나 비교 가능성에서 타인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때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내용을 쉽게 설명하거나, 노인의 의견일 거라 짐작하고 대신 전달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의사소통 지원일 뿐 진정한 의사결정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의 요양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할 때 치매 증상으로 바른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의사결정지원자는 그 노인이 과거에 어떤 치료나 돌봄을 선호했는지, 현재의 내적 욕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를 여러 방법으로 모색해서 알아내야 한다. 그 후 노인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의 욕구와 선호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지원의 핵심이다.

의사결정지원을 해야 하는 목적은 노인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

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의사와 권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즉, 노인을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던 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지원은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자신의 자율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를 ‘무능력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서 결정 능력을 일시적으로 결여(lack capacity to make specific decisions)’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우국희, 2013).

「똥꽃」이라는 책은 우리 사회가 노인에게 저지르는 무례와 무시가 곧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 이 책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치매 노인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의사결정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은 「정신능력법(MCA: the Mental Capacity Act, 2005)」에서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핵심 원칙 5가지를 제시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원칙 1. 모든 사람은 능력 부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능력이 있다.
- 원칙 2.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이 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가 지원되지 않는 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 원칙 3.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
- 원칙 4.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하여 행해진 행위 또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 원칙 5.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개인의 권리와 행동의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은 2018년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지원의 프로세스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자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의사형성 지원'이다. 이는 본인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는지, 또한 원하는 사항을 열린 질문(open question)으로 묻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의사표명 지원'이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의사결정지원자의 태도와 언어, 그리고 인적·물적·환경적 요소를 배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복잡한 결정사안은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선택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실현 지원’은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표명된 본인의 의사를 의사결정지원팀이 다직종 간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이용 가능한 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그 의사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방향성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의 역할을 ‘함께 결정하는 사람(partner)’으로 매김하며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1. 돕되, 대신하지 않는다: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하되, 최종 결정은 당사자가 내리도록 한다.
2. 충분한 시간을 준다: 노인은 즉시 답하지 않을 수 있다. 기다림은 존중의 또 다른 형태이다.
3.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의료·법률용어는 생활 언어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실패를 허용한다: 자기결정은 ‘올바른 선택을 할 권리’뿐 아니라 ‘실수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5. 작은 결정부터 존중한다: 옷, 식사, 일상습관 등 작은 선택이 존엄의 시작이다.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례로 ACP(Advanced Care Planning)가 있다. ACP는 ‘사전에(Advanced)’, ‘돌봄, 배려, 의료, 간호, 영양 등 각종 케어(Care)’, ‘계획 세우기(Planning)’라는 의미로 미래에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가치, 신념, 선호를 미리 탐색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본래 복지와 의료의 연계 차원에서 도입했다가 점차 단

순히 임종기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의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재택요양에서 시설요양으로 전환될 때 시설에서의 생활이 재택생활과 다르지 않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⁵⁾

주요 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생각하기	자신의 가치관, 삶의 목표, 미래에 어떤 치료나 돌봄을 받고 싶거나 받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 숙고
2단계: 대화하기	가족, 친구, 의료진 등과 자신의 생각·선호를 나누고 공유
3단계: 기록하기	자신의 선호와 지시사항을 문서화하거나 공식 양식으로 작성
4단계: 저장·공유하기	기록된 문서를 적절히 보관하고, 가족·대리인·의료진 등에게도 전달
5단계: 재검토하기	건강상태 변화, 가치관 변화 등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유사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일 뿐,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보다 포괄적·일반적 의료나 요양에 관한 사전지시제도

5)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08>

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신상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 입법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사전에 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원하는 공공신탁제도 등의 도입이 거론되면서 실행에 옮기려는 움직임도 있다. 노인 재산을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신탁제도는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자기 재산 관리 계획(생활비, 의료비, 상속 등)을 그의 의사에 따라 미리 설계해 이후 계약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끝까지 보장하는 장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5. 나가는 글 - 안전이라는 굴레를 넘어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이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논의가 노인이 사는 지역사회, 그리고 노인의 돌봄을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등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노인의 존엄권을 실천적으로 보장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보호와 안전이라는 이유로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노인의 살아온 삶과 현재의 당사자 관점에서 해결 방

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그들의 곁에서 돕는 ‘지원자’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대변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노인들의 자율권과 자기결정권을 제도적 한계나 관행 속에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노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는 ‘옹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인의 존엄을 실현하는 수호자이고, 미래에는 내가 그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일은 곧,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월평빌라 이야기」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설 입주자의 삶에 ‘위험하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힘이 있어서 돕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당사자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요리는 위험하다, 외출은 위험하다, 여행은 위험하다, 계단은 위험하다, 버스는 위험하다, 학교는 위험하다, 직장은 위험하다, 밤거리는 위험하다, 물건 옮기는 건 위험하다, 남을 돕는 건 위험하다, 비 오는 날은 위험하다…

이런 말은 실제 그 상황에서 직원과 입주자를 위축시키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아주 강하게 말이죠.

위험하다는 말은 때로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위험은 때로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혹시, 실재하지 않는 ‘전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그 속에 가두고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호’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의 결정을 제한하는 일이 실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 경향신문. (2011. 05. 06). 엘렌 랭어 실험: 선택이 노인에게 가져온 변화.
<https://www.khan.co.kr/article/201105062123315>
- 국가인권위원회(2024). 노년기,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지원.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 (2024.07~08).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10383&boardNo=7610388>
- 김효정. (2019). 독거노인의 자기결정권 인식과 의사결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125~133.
- 무라세 다카오. (2024). *돌봄, 동기화, 자유: 자유를 빼앗지 않는 돌봄이 가능할까*. 서울: 다다서재.
- 복지타임즈. (2023, September 20). 일본의 ACP(Advance Care Planning) 제도.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08>

요나스 요나손(Jonas Jonasson). 임호경 역. (2013).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열린책들.

우국희. (2013). 치매공공후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치매공공후견인의 활동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4(1), 95-120.

에이블뉴스. (2018. 01. 11). 위험에 처할 권리: 중증장애인가족시설 '월평빌라' 이야기-36.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38>

전희식, 김정임. (2008). *똥꽃: 그물코*.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Katarina Ingelman-Sundberg). 정장진 역. (2016).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열린책들.



**요양시설에서 존중받는 노후 :
인권 보호의 실천 방안**

이민홍(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양시설에서 존중받는 노후: 인권 보호의 실천 방안

이민홍(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요양시설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다. 노인이 오랜 시간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다.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 보장은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요양시설 거주 노인은 종종 ‘돌봄 대상’으로만 인식된다. 존엄과 자율성을 지닌 ‘권리 주체’로 충분히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거나 침해되는지,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권리를 단순히 ‘학대 예방’ 차원에서 이해하는 기존의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양시설 거주 노인은 인권 보유자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각으로 확장해야 한다. 요양시설 노인의 인간으로 권리(인권)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의 요양시설 거주 노인 관련 권리 규정과 실천 사례를 살펴보았다.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별화된 돌봄과 가정과 같

은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이 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요양시설이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였다.

1. 시작하며: 요양시설과 노인 인권을 바라보다

한국의 급격한 초고령화는 노쇠, 질병, 치매 등으로 24시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노인의 집중 돌봄은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요양병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약 5%로 50만 명 정도 된다(이윤경, 2025). 한국에서 노인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연동해서 집중 돌봄이 필요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도 당연히 인간으로 천부 인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시설 거주 노인이 보유한 인권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국회가 승인한 국제법, 대한민국 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다. 국제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또는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승인했으므로 시설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회권과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과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노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규

정하고 있다.

요양시설 생활 노인이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삶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으로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을 최초 2006년 마련해서 공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운영 및 생활 관련 정보를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별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 대한 권리, 사생활 권리, 부당한 신체구속이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 사회참여 활동 권리 등이 해당한다. 특히 노인에 한정하기보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 사회 등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요양시설 생활 노인이 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은 사뭇 다르다. 대표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등장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장시간 결박하는 사례,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방치한 사례, 부실 식사 및 낙상 반복 사례, 폭행한 사례 등이 밝혀져 노인 인권 논란이 제기되었다. 노인 학대는 인권 침해의 극단적인 범죄행위이다. 노인 인권 역시 단순히 ‘학대받지 않을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자기결정권, 사회참여권, 교육·문화 향유권, 건강권, 주거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한다. 만약 노인 인권을 학대 예방으로 한정한다면, 노인이 사회 주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상당 부분이 배제된다.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삶은 일반 가정과 달리 제약이 많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천부 인권, 국제법, 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이들의 자율성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가 무엇이며,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 및 제도 차원의 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요양시설에서 지켜야 할 노인의 권리 사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요양시설 생활 노인은 한 인간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한다고 해서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시설 생활 노인 권리는 일반 개인으로서 갖는 보편적 권리와 함께 집중 돌봄을 받는 상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수적 권리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이 한 개인으로서 갖는 권리는 자주 다뤄졌으므로 요양시설에서 갖는 특수한 권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의 사례를 살펴본다.

1) 미국: 요양시설 거주자 권리와 보호

미국 연방법과 주 법률은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권리 내용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2025)가 거주자의 권리와 돌봄 수준(Residents' Rights & Quality of Care)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는 단순히 돌봄을 받는 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자율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시설은 입소 시점부터 이 권리를 문서로 설명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의 시작은 노인이 존엄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생활 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개인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시설 내부 및 외부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인종·종교·나이·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는 것도 역시 핵심적인 권리이다. 언어·신체·성·정신 학대와 방임도 금지된다. 시설은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신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체적 결박이나 화학적 구속(진정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등 약물 사용으로 신체 및 정신적 행동 통제) 역시 규제되며, 거주자는 불필요한 제한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시설 거주 노인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 제기로 인한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의료적 돌봄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의사 선택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의료 기록 열람, 치료 변경 시 통보, 응급상황의 즉시 알림, 연명의료결정 및 사전의료지시 작성 권리도 보장된다.

경제적 권리로 노인은 자신의 금전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시설에 통장이나 현금을 맡겨둔 경우에도 안전한 보관과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다. 개인 물품 소유, 우편과 통신의 비밀 보장, 배우자와 동거, 방문객 맞이, 입·퇴실·이동 등 생활공간 선택 등의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시설은 침실, 룸메이트 변경 등 사전 통지 의무가 있으며, 화재·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열람도 허용해야 한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가족 및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권리도 중요하다. 노인은 가족이나 친구를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른 거주자의 방해 없이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 제공이 원칙이다. 가족이나 친구 이외에도 법률, 의료, 복지, 돌봄 지원자 등 누구든 원하는 시간에 만날 권리가 있다. 또한 누구나 ‘거주자 회의’ 또는 ‘가족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조직할 수 있다. 요양원은 회의 공간 제공 및 제안·건의 사항을 반드시 경청하고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시설을 떠나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필요시 퇴소를 선택할 수 있다. 시설에서 노인을 전송하거나 퇴소하는 경우는 건강 및 안전상의 필요, 건강 호전, 비

용 미납, 시설 폐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거주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 정부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또한 시설은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 다른 거주자와 갈등 개입, 법률 및 재정적 지원 연결, 퇴소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2) 영국: 요양시설 거주자와 가족의 소비자 권리

영국 정부에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소비자로 권리를 안내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Great Britain, 2018). 요양시설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노인과 그 가족은 일반 소비자 권리와 함께 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특별한 권리 보호를 받는다. 요양시설 거주 노인과 그 가족이 받는 권리는 비용부담 방식과 관계가 없이 모두 포괄하고 있다. 더 나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자신에게 좋은 선택과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노인과 가족의 소비자 권리는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서 시작한다. 자비 부담자, 지자체, 건강 및 사회복지 신탁(Health and Social Care Trust),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등 이용료 지급 방법,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시설, 활동 등에 대한 개요, 인력 배치 사항, 시설 감사 및 점검 결과, 시설 평가 등급, 요금 수준과 추가 비용, 보증금 여부, 선택적 추가 요금(병원 진료 동행, 미용 서비스 등), 입주 전 계약 조건과 퇴소 및 전환 가능 조건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양시설 계약 체계에서 자비 부담 거주자 권리는 계약서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계약서는 반드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과도하게 거주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요양시설 측의 일방적 요금 변경 등 불공정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계약의 본질적 목적은 거주자와 시설 간의 신뢰와 균형에 있다. 쌍방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합의한 내용만이 정당하게 이행될 수 있다.

요양시설 거주 중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상황에도 거주자 권리를 우선해서 보호해야 한다. 만약 계약된 서비스와 다르게 돌봄 내용이 현저히 바뀔 경우에는 시설은 이를 최소 28일 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해야 한다. 거주자는 별다른 손해 없이 계약 해지 및 퇴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또한 시설 퇴소와 관련해서는 거주자에게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퇴소 결정이 정당할 때 한정해서 최소 28일 전에 서면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요양시설은 계약서상 합의한 기준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확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을 거주자가 청구할 수 있다. 요양시설의 건물과

장비가 적합하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설 거주 노인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보장은 시설 이용자가 단순히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품질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주체자임을 의미한다. 뿐만 처리 절차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쉽게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다.

요양시설에 생활하는 노인은 일반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요양시설은 소비자 법규(consumers law)에 근거해서 계약의 합리적 이행과 공중 거래 기준에 부합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요양시설 거주자 권리 제도는 단순하게 서비스 소비자 보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기 의사와 존엄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용자 중심의 선택,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어우러진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돌봄서비스 품질과 노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하는 핵심적·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3) 독일: 요양시설 거주자 권리

독일에서 요양시설(Pflegeheim)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권리 보장은 사회법전(SGB XI, 장기요양보험법)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州) 차원의 감독 기구(Heimaufsicht)에서 법률 준수 여부 확인과 거주자 및 가족의 불만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여전히 존엄성과 자율성을 가진 시민으로 전제하고 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

는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21).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의 보장을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은 가능한 한 스스로 생활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돌봄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자 선택, 종교·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돌봄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요양시설의 일상적 돌봄 과정에서도 목욕, 식사, 이동, 기본적 간호 등이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체적 구속이나 약물 사용은 반드시 법적 근거와 거주 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노인의 개인 공간과 물품은 존중받아야 한다. 방문객을 맞이하거나 가족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의료적 측면에서 치료 계획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건강 상태와 돌봄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다. 또한 거주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여 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다(Deutscher Bundestag, 2013).

정보 접근과 계약 투명성도 중요한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입소 전후 노인과 가족은 계약 조건, 서비스 내용, 요금 체계, 추가 비용 여부 등을 명확히 안내받아야 한다. 요양보험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독일은 간병비 일부를 보험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비·식비·시설 운영비 등은 거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장기 거주자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한 사회복지장청(Sozialamt)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돌봄의 질이 미흡하거나 계약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 노인과 가족은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감독기관(Heimaufsicht)이 시설을 정기적 점검으로 개선 명령을 내린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계약된 서비스 질 이하의 돌봄을 받았을 때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비용 감액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21).

독일의 요양시설은 제도적으로 거주자의 존엄, 자율성, 사생활, 의료 참여권, 불만 제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설과 지역 간 서비스 질 격차, 본인 부담 비용 과다, 문화 및 종교 차원 요구 반영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과 인력 부족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리 보장을 어렵게 하는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4) 한국: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내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인간 존엄성 실현이 최우선 원칙이다(보건복지부, 2025). 시설 생활 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없이 노인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또한 이 지침은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노인 복지시설에서 입소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등 헌법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인권 존중과 이용

자 중심 운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한다. 차별·학대·방임 예방, 존엄성 보장, 참여와 자기결정 기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노인 인권 보호 실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설 입소 및 생활 과정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주요 생활 및 돌봄 과정(식사, 위생, 수면, 여가 등)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 둘째,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면회, 통신 등)이 가능하며, 종교·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를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시설 내에서의 사적 공간 및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되며, CCTV 등 보안장치 운영에도 사생활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 모든 활동에서 다양한 종교·문화·사회적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며,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복지 수준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당한 억제, 과도한 통제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는 즉각 외부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설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 및 윤리교육을 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직원 모두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노인은 고충이나 불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 내부적으로 고충처리절차, 외부적으로는 상담·신고 창구 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응급상황이나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할 때도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계속 구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최소 범위에서만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시설 인권보호지침은 자기결정, 존엄 보장, 사생활 보호, 안전 확보, 차별·학대 예방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시설 운영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요양시설에서 인권이 살아 있는 돌봄: 개별화된 돌봄과 집 같은 환경 만들기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거주할 때와 달리 ‘보호받는 존재’라는 사회적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러나 시설 생활한다고 해서 노인이 가진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노인은 집이든 요양시설이든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율성을 지닌다. 요양시설은 거주하는 노인에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어야 한다.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천 방안으로 ‘개별화된 돌봄(individualized care)’과 ‘집과 같은 환경(home-like environment)’ 만들기를 강조한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 문화변화 운동으로 집단시설이 노인에게 ‘집이 아니다’라는 한계를 도전해서 자율성이 있는 가정과 같은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노인을 단순한 집단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개별적 욕구와 생활사를 가진 특별한 인격체로 인식해 가정과 같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닛 케어(Unit Care)’와도 연결해 운영한다(이민홍, 2025). 단순히 노인 돌봄의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노인을 권리 주체로 바

라보는 인식 전환을 강조한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실천 방안으로 개별화된 돌봄, 자기결정권, 친밀한 관계,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등을 제안할 수 있다(Gutterman, 2023; Koren, 2010).

1) 개별화된 돌봄: 생활 주체성을 누리는 돌봄

노인 요양시설의 돌봄은 오랫동안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노인은 모두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개별적 존재다. 개별화된 돌봄이란 노인의 과거 생활 습관, 취향, 신념을 존중한다. 노인의 성향과 선호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사과 한 조각을 먹는 습관을 지닌 노인에게는 그 습관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침 식사 후에 차를 마시거나, 특정 음식을 선호하거나, 종교적 의례를 유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이 아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자기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노인의 생활 기록이나 개별 돌봄 계획서가 실제 생활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2) 자기결정권: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는 돌봄

자기결정권은 인간 존엄의 핵심이다. 요양시설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노인이 자신과 관련된 생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일상적 선택에서부터 의료적 결정, 그리고 생애 말기 돌봄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보통 노인

요양시설에서 식사, 취침, 일상 활동 등은 정해진 시간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 목욕 빈도, 일상복, 취침복 등을 노인이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치료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표현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거주자 회의’를 통해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구성에 노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노인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 자기결정권을 누려야 한다.

3) 친밀한 관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돌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물리적 거리로 관계가 줄어든다. 하지만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삶의 기반이다. 시설은 노인에게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번갈아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한 요양보호사가 일관되게 돌봄을 전담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면회나 온라인을 활용한 영상통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례화하거나 명절 및 기념일 행사에 가족이나 친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닫힌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지역 학생, 주민이 시설을 방문해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노인도 지

역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 및 여가 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지역에서 누구나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시설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사회참여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4) 집과 같은 환경: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

노인에게 요양시설 입소는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낯선 공간과 집단생활은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다. 요양시설이 개인 공간이 없는 병원 입원실처럼 되어 있어 두려워한다. 같은 방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때도 있다. 집에서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프라이버시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요양시설을 가능하면 집단 시설이 아니라 ‘집 같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대표적 방식이 일본의 ‘유닛 케어(Unit Care)’이다. 소규모 생활 단위(9명 내외)로 거실과 주방을 공동 이용하며, 각 노인은 1인실에서 생활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단일 요양시설을 여러 개(보통 3~10개)의 소규모 생활 단위(유닛)로 설계한다. 자신이 생활하는 유닛에서 다른 유닛으로 이동하는 것은 마치 다른 집에 마실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또한 노인의 방에는 가족사진이나 개인 물품을 둘 수 있다. 시설 입소 전에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작은 가구나 장식품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은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도 함께 생활하게 해서 최대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

한다. 집 주변에서와 같이 정원, 산책로, 작은 부엌, 영화를 혼자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등도 노인에게 익숙한 생활감을 준다. 노인에게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다(Gawande, 2014).



〈그림 1〉 미국 노인 요양시설의 애완견 방문 이미지

노인 요양시설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유한 노인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다. 이를 위해서 노인이 개별성을 존중받으며,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집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개별화된 돌봄, 자기결정권 존중, 친밀한 관계 형성, 집 같은 환경 조성은 이러한 권리 보장의 구체적 방식이다.

아래 <표 1> 은 한국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문화변화(개별화된 케어 및 집과 같은 환경)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차원의 실행전략을 수립해 적용한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실행전략을 이행한 시설(4개 노인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은 삶의 질과 인간중심 환경이 개선되었고, 우울감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고독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이민홍, 2019).

〈표 1〉 한국 노인 요양시설 문화변화 실행 사례

사실	자기결정권	친밀한 관계	집과 같은 요양원	지역사회 교류
A	· 개별 공간 활용 및 구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 · 개별 목록 실시	· 1:1 담당제 운영: 관계 강화 · 노인스킨십 · 개별 케어 강화: 담당제 사례관리	· 일상복과 잠옷 착용 지원	· 대단위 그룹 활동 소그룹으로 변형 · 지역사회 참여: 주민센터 및 도서관 이용 증대
B	· 목욕 방법과 횟수의 선택, 개별 시장 내들이, 어르신 방 명패 사용, 기호도 간식, 개인 조명 및 냉장고 제공	· 직원과 어르신의 가족 맺기	· 사적인 공간 마련 · 거주자 개인별 사물관리 · 개인방의 공동물품을 공동실로 이동 · 개인별 의복 사용	· 아동시설과 결연 사업: 세대 교류, 세대 공존 · 동네 어르신과의 교류 활성화
C	· 간식 욕구 표현 기회 제공	· 출근 시 라운딩: 인사하기 · 인사 시 이용자들과 손 마주 잡기	· 개인 물품 집에서 가져와 사용: 이불, 베개, 사진, 물병 등 · 물건 본인 손에 닿을 수 있는 주변 배치	· 토요일 음악(악기) 공연에 지역주민들 초청 · 중고등학생 자원 봉사 및 재능기부 · 확대: 세대 교류
D	· 거주자 선호 고려: 복수 간식 중 선택 · 목욕 횟수, 방법, 시간 등 거주자 스스로 결정	· 거주자 전담제 운영 · 사랑(愛), 함께(愛): 거주자&직원 서로 이해하기 · Hug Day 지정: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기	· 손자 손녀 만들기 · 거주자 개인별 게시판 만들기	· 세상 품기: 지역주민과 함께 연계 활동

출처: 이민홍(2019). 표 1. 문화변화 실행서 수립: 핵심과제(p. 84) 내용 수정

4. 한국 요양시설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제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요양시설은 단순한 돌봄 공간이 아니라 노인이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다.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의 삶은 단순히 보호받는 차원이 아니라 노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존중되는 생활이어야 한다. 개별화된 돌봄, 자기 결정권, 친밀한 관계, 집과 같은 환경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현장 실천적, 교육·문화적 측면에서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제도적 측면: 법과 정책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역시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노인이 돌봄을 받는 의존자가 아니라 권리 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설 내 인권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법적 권리를 구체적인 생활 현장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는 정도를 관리·감독하고 평가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없다면 이는 문서에만 존재하는 시설 노인의 권리로 머무르

게 된다. 또한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서 노인에게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설의 설치 기준에서도 전통적인 병원과 같은 구조에서 소규모 생활 단위로 거주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유닛 케어’를 한국의 요양시설 표준 모델로 제도화해야 한다.

2) 현장 실천 측면: 돌봄 인력과 공간 구조

현장에서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핵심은 사람과 공간이다. 먼저 돌봄 인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노인의 생활 동반자이다. 요양보호사가 개별 노인의 생활 습관과 욕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거주 노인별로 전담하는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서 안정적이고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도록 해야 단순한 돌봄 효율성을 넘어서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간 구조 역시 최대한 가정과 같이 조성해야 한다. 소규모 생활 단위와 1~2인실 중심으로 가족적 분위기에서 거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의 방에는 개인의 사진, 물건, 취미 도구를 자유롭게 둘 수 있게 한다. 시설 내 자신의 방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며, 공용 공간에서는 다른 입소자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게 한다.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정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식사나 목욕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늦잠을 자고 싶은 날에는 아침을 거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원하면 혼자 식사하거나 가족과 함

깨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실현을 의미한다.

3) 교육·문화 측면: 노인 인권교육과 문화적 인식 변화

제도와 시설이 변화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요양시설 노인의 권리 보장은 불가능하다. 돌봄 종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 교육은 학대와 방임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이 핵심이다. 학대와 방임은 노인의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시설 거주 노인은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아가 한 인간으로 자유권(자기결정권)과 사회권(건강, 돌봄, 사회참여, 주거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이동해야 한다.

동시에 노인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필요하다.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권리 보장에 중요한 요소다. 노인 요양시설이 외부에 닫힌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된 열린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 노인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다. 가족 간담회, 세대 간 문화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을 노인 요양시설에 확산해야 한다.

사회에서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시설 거주 노인은 한 인간으로서 권리보유자이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한 인간으로 자유권

과 사회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홍보, 캠페인, 미디어 등을 통해 계속 전달해서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해 가야 한다.

끝으로 요양원 거주 노인의 자유권과 사회권 보장은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변화 과정이다. 법과 정책은 권리의 틀을 제시하고, 현장 실천은 그 틀을 생활로 구체화하며, 교육과 문화는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꾼다.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요양시설은 더 이상 ‘노인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집’이 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지침」.

이민홍(2019). 노인요양시설 문화변화 모델 적용의 효과성 연구: 거주노인의 삶의 질, 인간중심환경, 고독 및 우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1, 79~98.

이민홍(2025). 노년기 돌봄학 이해. 학지사.

이윤경(2025). 노인 돌봄 권리의 확장과 정책과제: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 권리 보장.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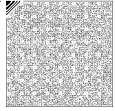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2020). Wohn - und Betreuungsvertragsgesetz (WVBVG).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2021). Elftes Buch Sozialgesetzbuch - SGB XI - (Soziale Pflegeversicherung).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1). Zwölftes Buch Sozialgesetzbuch – SGB XII – (Sozialhilfe).
- Deutscher Bundestag(2013).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Patientenrechtegesetz). Bundesgesetzblatt I, Nr. 9.
- Gawande, A.(2014). Being mortal: Medicine and what matters in the end. Metropolitan Books.
- Great Britain(2018). Care homes: consumer rights for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 Gutterman, A. S.(2023). Achieving the Human Right to a Caring Society in an Aging America. Available at SSRN 4605201.
- Heinze, R. G., & Naegele, G.(2021). Long-term care in Germany: Trends and challenges.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33(2), 95-112.
- Koren, M. J.(2010). Person-centered care for nursing home residents: The culture-change movement. Health affairs, 29(2), 312-317.
- U.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2025). Residents' Rights & Quality of Care.



국가인권위원회



노년, 연령주의와 노인인권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정책교육국 사회인권과 노인인권팀

전 화 (02) 2125-9845 **FAX** (02) 2125-0933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 화 (02) 2278-1990

ISBN 979-11-990980-4-6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
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